감 사 보 고 서

-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

2019. 7.

감 사 원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대상업무 현황 및 실태 ····· 4

Ⅲ. 감사결과 ····· 10

1. 감사결과 총괄 ····· 10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12

(1)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 12

(2) 미인가 대안학교 보호구역 지정 제외 불합리(통보) ····· 42

(3) 보행사고 다발지역 속도제한 등 안전조치 미흡(통보) ····· 50

(4)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적용 검토 미비(통보) ····· 82

⑸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에 보행신호시간 연장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통보(모범)] ·· 87

(6) 어린이보호구역 지연 지정 부적정(통보) ····· 92

(7) 초등학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검토 미흡(통보) ····· 97

(8)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운용방법 부적정(통보) ····· 115

(9)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부적정(통보) ····· 117

(10) 교통사고원인조사 제도 운용 부적정(통보) ····· 125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이 적재적소에 지정·관리되지 않고 교통법제가 차량소통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및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는 등 교통약자·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교통약자와 보행자 교통사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적정성과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보호구역 점검을 통해 교통약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보완하고,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표 1]과 같이 교통안전지수[1]가 낮은 49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

1)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로서 ① 사업용 자동차, ② 자전거 및 이륜차, ③ 보행자, ④ 교통약자, ⑤ 운전자, ⑥ 도로환경 등 6개 영역으로 구분. 이번 감사에서는 교통약자와 보행자 영역만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4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음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교통약자·보행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개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교육부)을 대상으로 관련 시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표 1] 교통안전지수 하위 지방자치단체 현황

지역	해당 자치단체	지역	해당 자치단체
서울 (8)	강남구, 관악구, 동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경북 (6)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포항시
부산 (2)	금정구, 동래구	전남 (2)	목포시, 여수시
대구 (4)	달서구, 북구, 수성구, 중구	전북 (3)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대전 (2)	동구, 서구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광주 (2)	북구, 서구	충남 (3)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
경기 (12)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충북 (1)	청주시
경남 (3)	김해시, 사천시, 창원시	계	49개소

자료: 도로교통공단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언론보도, 교통안전 관련 법령·규정 및 각종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2]을 통해 교통약자와 보행자 관련 사고 발생실태와 특징 등을 분석하였으며, 2019. 3. 18.부터 같은 해 4. 5.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2)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교통안전법」 제5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 통합, 분석하여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함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 4. 2.에 경찰청 도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9. 6. 2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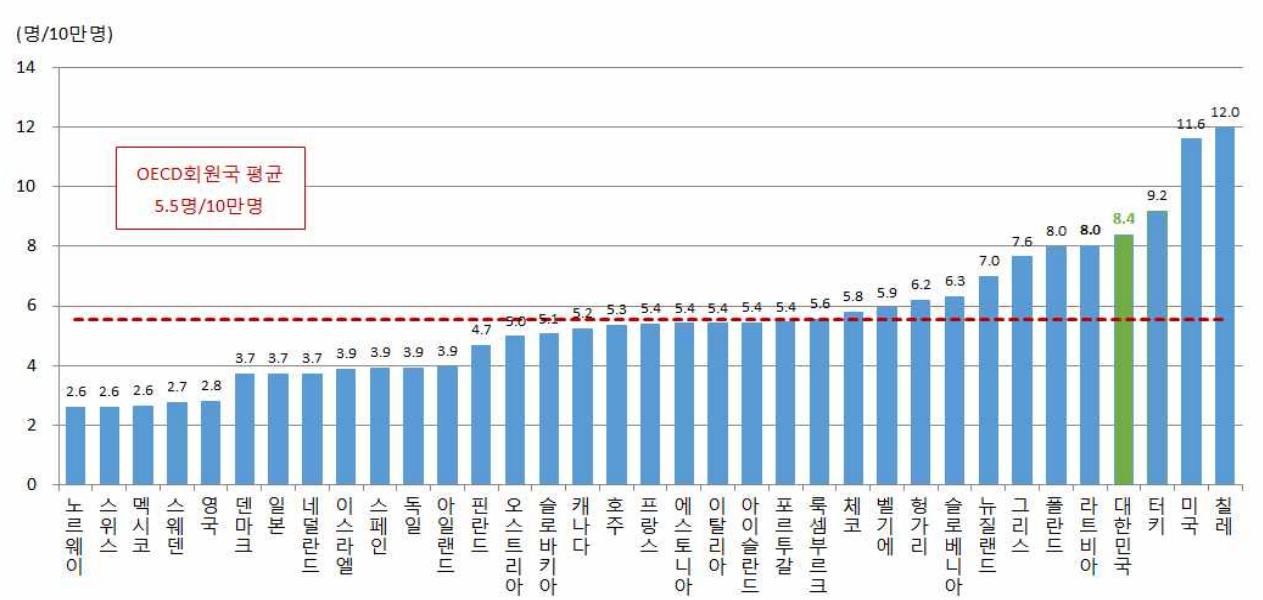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Ⅱ. 감사대상업무 현황 및 실태

1. 교통사고 실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도표 1]과 같이 8.4명으로 35개 OECD 회원국 중 칠레, 미국,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으며 OECD 평균(5.5명)의 1.5배 수준이다.

[도표 1]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주: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는 감사기간 중 확인 가능한 최신 통계인 2016년 통계자료를 사용함

자료: 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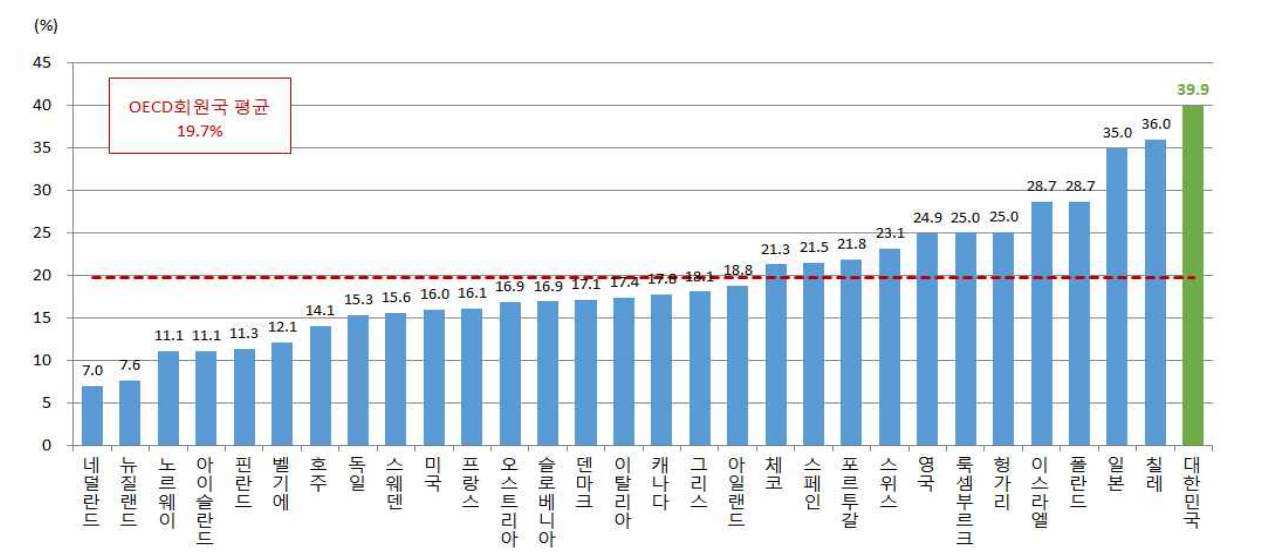
특히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승차 중 사망자는 1.6명으로 OECD 평균(2.5명)의 64%에 불과하나 보행 중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1.1명)의 3배에 이르고, [도표 2]와 같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의 비중이 39.9%로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OECD 평균(1.0명)에 근접한 반면, [도표 3]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5.6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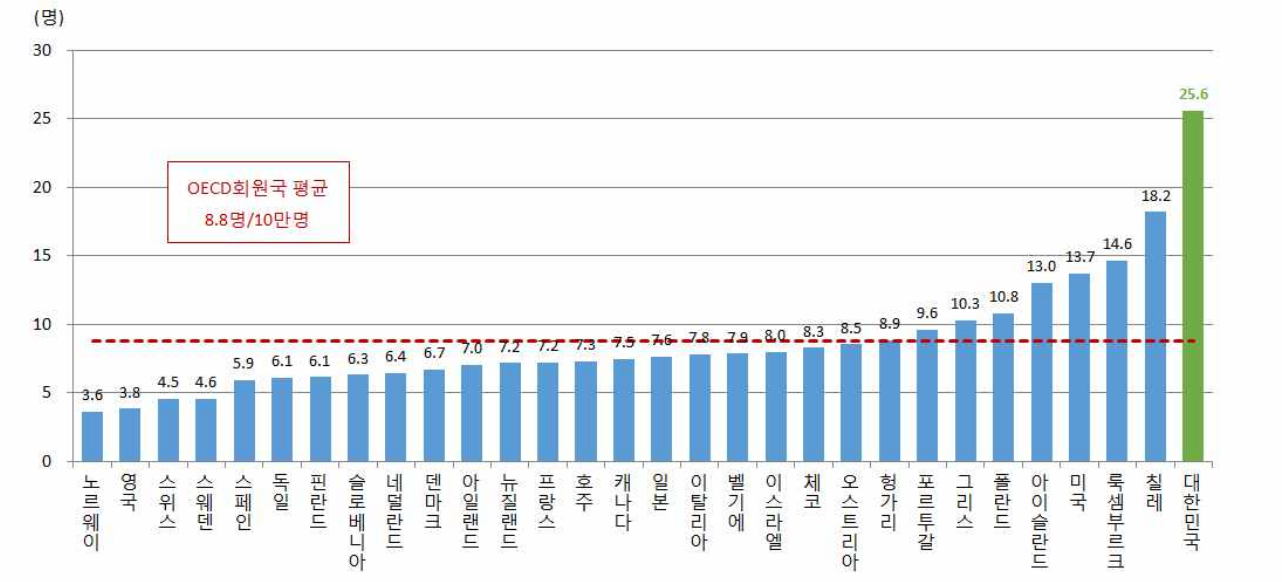
명으로 OECD 평균(8.8명)의 3배 수준으로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도표 2] 보행중 사망자 비율



자료: 도로교통공단

[도표 3]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료: 도로교통공단

2. 교통약자 보호구역 현황 및 관리체계

[표 2]와 같이 2018년 말 현재 전국에서 총 18,192개소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지정·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영 중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9개소(병설유치원 중복 4,092개소 포함), 노인보호구역이 1,596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이 87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다수(9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교통약자 보호구역 현황

연번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계
1	서울	1,732	130	6	1,868
2	부산	905	67	1	973
3	대구	654	53	6	713
4	인천	705	70	6	781
5	광주	613	47	11	671
6	대전	455	87	1	543
7	울산	347	28	2	377
8	경기	3,722	229	28	3,979
9	강원	773	44	1	818
10	충북	740	94	1	835
11	충남	1,026	427	8	1,461
12	세종	95	5	0	100
13	전북	1,009	39	1	1,049
14	전남	1,025	31	1	1,057
15	경북	1,201	120	0	1,321
16	경남	1,185	55	0	1,240
17	제주	322	70	14	406
계	-	16,509	1,596	87	18,192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교통약자 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지정되며「어린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가 만든 업무 매뉴얼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서 '보호구역 내 시설 기준', '보호구역 개선사업 수행절차'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보호구역 지정·관리자인 시장 등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그림 1]과 같이 초등학교장 등 시설 운영자의 신청 및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시장 등이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표시·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과 보도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주정차 금지, 차량 운행속도 제한 등 규제조치가 시행된다.

[그림 1]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 절차

지정 신청 (어린이·노인·장애인 해당 시설의 장)	○ 초등학교 등의 장,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장 등에게 지정 신청 ※ 단,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지정 여부 조사 (시장 등)	○ 시장 등이 지정 여부 조사 1. 시설 주변 도로의 보행,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3. 시설 주변 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4. 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통행로 체계 등 ※ 시장 등은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의·지정 (지방경찰청 등)	○ 시장 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리 (시장 등)	○ 시장 등은 다음 연도(매년 3. 31.까지)의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 ○ 시장 등은 다음 연도 지정, 관리계획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시·군의 경우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매년 4. 30.까지) ○ 시장 등은 매년 6. 30.과 12. 31.까지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

자료: 행정안전부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3. 교통약자 및 보행자 안전정책 현황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 3]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개의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3]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19년 예산(국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1,420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진단·정비	115
초등학교 주변 보도·보행로 설치사업	37,90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000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진단·정비	2,51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750
교통안전 홍보·교육	0
합계	69,695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표 4]와 같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등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사업과 대책 추진 결과 2018년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9.7% 줄어든 3,781명을 기록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표 4]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편 주요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제도개선 추진 현황
1.보행자 우선 통행제도로 전면 개편	▪ 횡단보도·교차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 ▪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
2.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 조기 확산	▪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안전속도 5030) ▪ 차량속도 저감유도 기법 확산	▪ 이면도로 속도제한(30구역) 관련「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도심지 속도제한(60km/h→50km/h) 관련「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완료(2019. 4. 17.)
3.보행사고 취약구간 개선 및 관리 강화	▪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확대 ▪ 지역도로 등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자료: 경찰청, 행정안전부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하였다.

[표 5] 처분요구별 지적사항

(단위: 건, 명)

구 분	합 계	주의요구	통보	
			일반	모범
건수 (인원)	14 (1)	1	12	1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 분야

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안전조치를 시행하면서 **교통약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보호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거나** 표지판 미설치, 이면도로 속도제한 미조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하여 보호구역 지정효과 미흡

②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법」을 제정·운용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나) 보행자 안전관리 분야

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 없이** '안전속도 5030' 등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보행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행사고 취약지역에서 보행사고가 반복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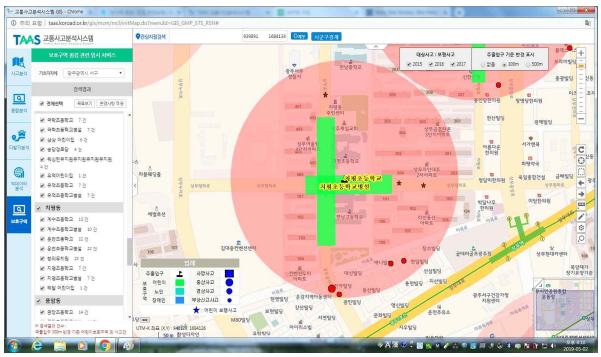
② 경찰청에서 교차로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신호체계인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LPI)'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안전 개선 미흡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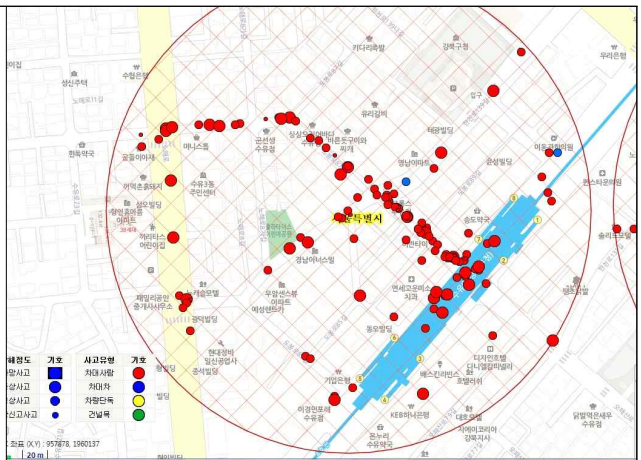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보호구역 주변의 사고 발생 실태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청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등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한편 이번 감사기간 중 전국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25건 이상 발생한 '보행사고 다발지역'(전국 584개소)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GIS로 구현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호구역 현황 및 보행사고 실태를 확인하거나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3)]

[그림 2] 보호구역 등 GIS 구현 사례



보호구역 사례: 광주 서구 0초등학교 부근



보행사고 다발지역 사례: 서울 수유역 부근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3) 보호구역 현황은 감사기간 중 현장점검 대상인 49개 지방자치단체만 우선 확인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9년 상반기 중 분석작업을 완료하여 제공할 예정임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개별처분요구안 (1)번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경찰청

조 치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경찰청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 등[4]으로 하여금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안전사업과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범위 미조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행하는 교통약자의 수와 통행로 체계, 자동차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5] 2.3.4에 따르면

4) 시장 등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를 말함
5) 2015년 9월 구 국민안전처에서 발간 등록(발간등록번호 11-1750000-000035-14)한 것으로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과 보호구역사업의 개선점을 반영한 운영 매뉴얼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시장 등은 최초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주변 교통 상황과 통행 행태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정 범위로 보호구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방지라는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 등은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행로 체계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범위로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8.~4. 5.) 중 교통안전지수[6] 하위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의 교통사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7], 광주광역시 서구 ☆초등학교(2008. 3. 18. 지정)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초등학교(1997. 10. 10. 지정)의 경우 지정된 보호구역 연접 구간에서 최근 3년간(2015~2017년) 어린이 보행사고가 각각 4건씩 발생하는 등 [별표 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범위 조정 필요 지점 현황”과 같이 35개 보호구역(어린이 33개, 노인 2개)의 연접구간에서 교통약자 보행사고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발생되었는데도 보호구역 범위 연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구간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

---

6)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로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중 이번 감사에 적합한 보행자와 교통약자 영역의 지표를 평가하여 최근 3년간(2015~2017년) 교통안전도를 산술평균한 것임

7)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구간의 GPS 좌표를 활용하여 지도상에 보호구역을 표시한 후, 지정대상시설 주 출입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표시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3.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표지 미설치

가. 판단기준(관련 규정)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등은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안전표지[8]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보호구역 도로표지[9]를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교통약자 보호구역 18,192개소(어린이 16,509개소, 노인 1,596개소, 장애인 87개소) 전체의 도로 구간에 대해 안전표지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 양산시 ●초등학교(2000. 3. 9. 지정)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3개 구간 중 ● 13길(연장거리 137m)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별표 2]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표지 미설치 현황”과 같이 26개 보호구역 내 32개 도로 구간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호구역 안전표지[10]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과 [별표 6] Ⅱ. ‘개별기준’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제133호, 제324호 및 제536호 안전표지, 노인보호구역은 제323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장애인보호구역은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를 각각 설치하되, 제133호는 어린이보호구역 전 50m부터 200m까지의 도로 우측 등에 설치하고 제324호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하도록 규정

9)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와 [별표]의 도로표지로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정주식 또는 측주식으로 설치

10) 안전표지는 물론 도로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그림 2] 보호구역 지정표지 미설치 사례



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



보호구역 안전표지 미설치

자료: 경상남도 양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4.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속도제한(30㎞/h 이내) 미조치

가. 판단기준(관련 규정)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9조 제1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2.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 운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특히 이면도로에서는 반드시 30㎞/h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교통약자 보호구역 18,192개소 전체의 제한속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 창원시 ◎초등학교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초등학교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면도로 구간의 차량 운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3] “속도제한(30km/h 이내) 미조치된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현황”과 같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132개 보호구역 이면도로 구간에 대해 차량 운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그림 3]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속도제한(30㎞/h 이내) 미조치 사례



경상남도 창원시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초등학교

자료: 창원시 및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교통약자 안전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등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존 보호구역 안전표지와 속도제한(30㎞/h 이내)이 누락된 지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차량 운행속도 제한(30km/h 이내) 등 추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 등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반영하여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찰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구간과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 속도제한(30㎞/h이내) 조치를 하지 않은 구간을 신속히 보완하고, 앞으로 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와 속도제한 등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범위 조정 필요 지점 현황

(단위: 건)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정대상시설명	보호구역	최초 지정일자	조정 필요 지점 교통약자 사고건수(2015~2017년)
1	서울	종로구	숭인동	-	어린이	1995	3
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어린이	2009	2
3	서울	송파구	장지동	-	어린이	2013-12-30	2
4	부산	동래구	안락동	-	어린이	1996-05-21	2
5	부산	동래구	수안동	-	어린이	2000-03-06	2
6	부산	금정구	남산동	-	어린이	1996-04-12	2
7	대구	북구	학정동	-	어린이	2007-12-10	2
8	대구	수성구	매호동	-	어린이	1998-09-08	2
9	대구	달서구	용산동	-	어린이	1998-09-08	2
10	대구	달서구	감삼동	-	어린이	1997-10-10	4
11	대구	달서구	송현동	-	어린이	2016-11-30	2
12	광주	서구	치평동	-	어린이	2001-03-01	2
13	광주	서구	동천동	-	어린이	2008-03-18	4
14	광주	북구	두암동	-	어린이	1997-10-25	2
15	경기	성남시	태평동	-	어린이	1998-12-15	2
16	경기	성남시	태평동	-	어린이	1996-06-10	2
17	경기	성남시	수진동	-	노인	2009-02-15	2
18	경기	성남시	금광동	-	어린이	1996-03-29	2
19	경기	성남시	도촌동	-	어린이	2016-06-23	2
20	경기	안산시	본오동	-	어린이	2012-01-30	2
21	경기	안산시	선부동	-	어린이	2005-11-26	2
22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	어린이	2005-01-10	3
23	경기	시흥시	대야동	-	어린이	2001	2
24	충북	청주시	가경동	-	어린이	2004-02-24	2
25	충남	논산시	내동	-	어린이	1997-01-25	2
26	전북	전주시	서신동	-	어린이	1997-10-09	2
27	전북	익산시	동산동	-	어린이	1998-04-22	2
28	전북	익산시	영등동	-	어린이	1997-04-24	2
29	전남	여수시	문수동	-	어린이	2000-08-29	2
30	경북	포항시	대도동	-	어린이	1996-08-23	3
31	경남	창원시	서성동	-	노인	2009	2
32	경남	김해시	외동	-	어린이	1999-04-07	2
33	경남	김해시	삼방동	-	어린이	1998-01-20	2
34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	어린이	1996-04-13	2
35	제주	제주시	노형동	-	어린이	2007-02-27	2

주: 보호구역 시·종점부터 1개 블록 구간 내 어린이/노인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선별 (조정필요 지점이 도로의 유형이 변화하는 구간에 있을 경우 제외)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2]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표지 미설치 현황

(단위: m)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시설	지정일자	지정표지 미설치 구간	연장거리
1	강원	고성군	거진읍	-	2017-04-28	-	92
2	강원	태백시	동점동	-	2010-12-31	-	90
3	강원	양구군	동면	-	2017-09-19	-	400
4	경기	오산시	오산동	-	2011-01-12	-	90
5	경남	양산시	덕계동	-	2000-03-09	-	137
6	경남	양산시	하북면	-	1996-08-10	-	170
7	경남	양산시	교동	-	2008-03-01	-	66
8	인천	서구	경서동	-	2013-03-30	-	170
						-	40
9	인천	서구	청라동	-	2018-05-14	-	85
10	인천	서구	불로동	-	2018-05-14	-	140
11	인천	서구	청라동	-	2018-03-31	-	110
12	인천	서구	검암동	-	2013-03-26	-	130
13	인천	서구	경서동	-	2013-03-03	-	100
14	인천	남동구	만수동	-	2012-01-01	-	300
						-	210
15	인천	남동구	수산동	-	2012-01-01	-	260
16	인천	남동구	운연동	-	2012-01-01	-	170
17	인천	남동구	도림동	-	2012-01-01	-	190
						-	140
						-	80
18	전남	함평군	대동면	-	2004-03-31	-	190
						-	150
19	충남	공주시	반포면	-	1995-12-31	-	200
20	충남	공주시	봉황동	-	2010-11-15	-	350
21	충남	공주시	신관동	-	2010-11-15	-	200
22	충남	아산시	탕정면	-	2017-10-19	-	100
23	충북	보은군	마로면	-	1995-11-24	-	100
						-	100
24	충북	보은군	회남면	-	2010	-	150
25	충북	보은군	회인면	-	2000-07	-	160
26	충북	진천군	이월면	-	2018-06-12	-	21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3]

속도제한(30㎞/h이내) 미조치된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현황

(단위: m)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시설	지정일자	이면도로	연장거리	도로폭	보차도 분리
1	서울	광진구	광장동	-	1995-10-18	-	110	3~4	X
						-	73	7	X
2	서울	광진구	자양4동	-	2006-03-20	-	44	6	X
3	서울	서초구	양재2동	-	1999	-	125	10	X
4	서울	송파구	마천동	-	2006-07-04	-	25	6	O
5	서울	송파구	석촌동	-	2009-03-20	-	200	5.5~7.7	O
						-	80	5.2	X
6	서울	송파구	가락동	-	2008-06-17	-	120	12	O
7	서울	송파구	풍납2동	-	2009-03-20	-	80	7.8	X
						-	75	5.7	X
8	서울	송파구	마천1동	-	2010-12-28	-	140	5.5	X
9	부산	영도구	영선1동7	-	2010-12-06	-	124	6	X
10	부산	북구	금곡동	-	2010-07-21	-	115	5	O
11	부산	강서구	명지동	-	2017-11-22	-	300	12~14	O
12	대구	서구	평리동	-	2008-09-26	-	104	7.8	X
13	대구	달성군	화원읍	-	2014-04-16	-	92	4~5	X
14	대구	달성군	논공읍	-	1996-05-28	-	338	10	X
						-	178	4	X
						-	132	9	O
						-	133	7	O
						-	221	7	O
15	대구	달성군	다사읍	-	2003-07-14	-	59	4~5	X
16	대구	달성군	구지면	-	2017-03-09	-	260	12	O
17	인천	남동구	구월2동	-	1996-01-03	-	50	8.8	X
18	인천	남동구	구월2동	-	1996-01-05	-	230	6	X
19	인천	남동구	간석1동	-	1996-01-08	-	216	8	X
20	인천	남동구	간석3동	-	1997-01-01	-	115	6	X
21	인천	남동구	만수동	-	2000-01-01	-	106	8	O
						-	118	8	X
22	인천	남동구	남촌동	-	2002-01-01	-	125	10	O
23	인천	남동구	구월동	-	1995-02-03	-	50	6	X
						-	50	6	X
24	인천	남동구	만수동	-	1995-01-01	-	144	8	X
						-	111	8	X
25	인천	남동구	간석1동	-	1995-01-01	-	100	9	X
						-	130	10	X
26	인천	남동구	만수5동	-	1997-01-01	-	110	14	O
						-	146	8	X
						-	107	14	O
27	인천	남동구	만수2동	-	1998-02-09	-	161	8	O
28	인천	남동구	간석1동	-	1998-01-01	-	194	6	X
29	인천	남동구	구월2동	-	1998-02-17	-	119	4	X
						-	127	5	X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시설	지정일자	이면도로	연장거리	도로폭	보차도 분리
30	인천	남동구	남촌동	-	2001-01-01	-	125	10	O
31	인천	남동구	만수5동	-	2001-01-01	-	190	14	O
32	인천	남동구	만수6동	-	2010-01-01	-	239	6	X
33	인천	남동구	간석1동	-	2011-12-01	-	94	8	X
34	인천	남동구	서창동	-	2010-01-01	-	260	8	X
35	인천	남동구	간석동	-	2014-05-09	-	42	6	X
36	인천	남동구	도림동	-	2015-09-14	-	100	10	X
37	인천	서구	가정동	-	1995-01-01	-	50	20	O
						-	50	20	X
38	인천	서구	신현동	-	1996-01-05	-	100	6	X
39	인천	서구	석남2동	-	1996-01-06	-	160	4.5	X
40	인천	서구	석남1동	-	1996-01-07	-	260	8	O
						-	140	7.2	X
41	인천	서구	신현동	-	1997-01-12	-	125	8	X
42	인천	서구	당하동	-	2000-01-19	-	240	12	O
						-	170	12	O
43	인천	서구	불로동	-	2002-01-23	-	110	8	X
						-	510	12	O
44	인천	서구	검암동	-	2004-01-27	-	360	8	X
						-	240	8	O
						-	250	8	X
45	인천	서구	경서동	-	2005-01-32	-	230	8	O
46	인천	서구	원당동	-	2006-01-33	-	50	6	X
47	인천	서구	가좌4동	-	1997-02-06	-	160	6	X
48	인천	서구	석남동	-	1999-02-11	-	50	20	O
						-	50	8	X
49	인천	서구	신현동	-	1999-02-12	-	60	8	X
50	인천	서구	석남동	-	2000-02-19	-	50	6	X
51	인천	서구	금곡동	-	2001-02-24	-	240	4	X
52	인천	서구	원당동	-	2011-12-26	-	335	8~10	X
						-	285	8	X
53	인천	서구	마전동	-	2012-04-13	-	255	6~8	X
						-	120	6	X
						-	120	8	X
54	인천	서구	경서동	-	2012-04-13	-	140	8	X
55	인천	서구	심곡동	-	2012-09-19	-	120	8	X
						-	80	6	X
56	인천	서구	석남3동	-	2006-03-07	-	120	8	X
57	인천	서구	가정3동	-	2006-03-08	-	180	6	X
58	인천	서구	연희동	-	2006-03-03	-	100	8	X
59	인천	서구	심곡동	-	2006-03-05	-	120	8	X
						-	140	8	X
60	인천	서구	공촌동	-	2006-03-02	-	210	6~7	X
61	인천	서구	경서동	-	2012-09-19	-	210	6~7	X
62	인천	서구	심곡동	-	2012-11-27	-	170	7	X
63	인천	서구	가좌3동	-	2012-12-11	-	100	8	X
64	인천	서구	원당동	-	2012-12-18	-	100	8	X
65	인천	서구	경서동	-	2013-03-23	-	206	8	X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시설	지정일자	이면도로	연장거리	도로폭	보차도 분리
66	인천	서구	석남동	-	2013-03-27	-	70	7	X
						-	185	4	X
67	인천	서구	석남1동	-	2013-03-30	-	100	7	X
68	인천	서구	경서동	-	2015-11-09	-	55	8	X
						-	40	8	O
69	인천	서구	가정동	-	2016-01-04	-	150	12	O
70	인천	서구	경서동	-	2017-03-16	-	105	8	X
71	대전	유성구	진잠동	-	2012-05-18	-	511	5	X
						-	147	5	X
72	대전	유성구	교촌동	-	2012-10-16	-	259	3	X
73	대전	대덕구	목상동	-	2014-06-27	-	173	6	X
74	대전	대덕구	비래동	-	2014-06-27	-	160	9	O
75	대전	대덕구	오정동	-	2017-04-04	-	142	8	X
76	경기	군포시	금정동	-	1995-12-30	-	105	6	X
						-	15	7	X
						-	50	8	X
77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	2009-03-18	-	40	7	X
78	경기	군포시	당동	-	2011-03-21	-	40	5	X
79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4동	-	2012-01-29	-	118	7	X
80	강원	고성군	간성읍	-	2004-01-01	-	129	6	X
						-	96	5	X
81	강원	태백시	통동	-	2010-12-31	-	155	3	X
82	충북	보은군	보은읍	-	2000-07	-	170	5	X
83	충북	보은군	산외면	-	2000-07	-	180	5	X
84	충북	보은군	보은읍	-	2000-07	-	175	6	X
85	충북	증평군	증평읍	-	1996-02-29	-	100	4	X
86	충북	증평군	증평읍	-	1996-02-29	-	380	7	O
87	충남	공주시	의당면	-	2010-11-15	-	129	6	X
88	충남	홍성군	홍동면	-	2006-10-30	-	463	5	X
89	경북	안동	안기동	-	1998-06-16	-	187	7	O
90	경북	안동	북후면	-	1998-06-16	-	86	7	X
91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산호동	-	1996-01-20	-	240	8	X
						-	65	6	X
92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산호동	-	1996-01-10	-	70	8	O
93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성호동	-	1996-05-30	-	140	5	X
94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장군동	-	2000-06-28	-	80	6	O
95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자산동	-	2009-12-18	-	220	6	X
96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	2009-12-18	-	170	5	X
97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교방동	-	2007-05-17	-	90	4	X
98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자산동	-	2007-05-17	-	110	6	X
						-	50	6	X
99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합성동	-	2009-12-17	-	78	8	X
100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양덕동	-	2009-12-17	-	110	7	X
101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구암동	-	2009-12-17	-	125	6	X
102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동	-	2009-12-17	-	100	6	X
103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	-	1996-01-20	-	180	6	O
104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	-	2013-10-16	-	160	8	X
105	경남	양산시	북부동	-	2005-03-01	-	93	8	O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시설	지정일자	이면도로	연장거리	도로폭	보차도 분리
106	경남	양산시	물금읍	-	2008-03-01	-	96	6~8	X
107	경남	양산시	물금읍	-	2008-03-01	-	218	8	O
						-	158	8	O
						-	90	8	X
						-	35	8	X
108	경남	창원시성산구	가음동	-	2008-02-21	-	100	10	X
						-	40	12	X
						-	100	8	X
109	경남	창원시성산구	남양동	-	1997-05-28	-	138	8	O
						-	167	8	X
110	경남	창원시성산구	용호동	-	2004-08-31	-	230	7	X
						-	130	7	X
111	경남	창원시성산구	사파동	-	2008-02-21	-	103	8	X
						-	109	6	X
112	경남	창원시성산구	사파동	-	2008-02-21	-	124	8	X
						-	103	10	X
113	경남	창원시성산구	신월동	-	2008-02-21	-	135	8~9	X
						-	105	8	X
114	경남	창원시진해구	마천동	-	2004-04-20	-	60	6	X
115	대구	서구	상리동	-	2012-04-23	-	57	8.2	X
						-	30	5.3	X
116	인천	남동구	구월1동	-	2003-06-23	-	70	4	O
117	인천	서구	심곡동	-	2009-01	-	110	6	O
118	대전	유성구	송정동	-	2008-10-10	-	150	3	X
119	대전	유성구	관평동	-	2012-05-18	-	157	8	X
120	대전	유성구	봉산동	-	2012-05-18	-	90	8	X
121	대전	유성구	구암동	-	2012-05-18	-	120	8	X
						-	150	10	X
122	대전	유성구	원내동	-	2011-12-14	-	140	6	X
						-	140	8	X
123	대전	유성구	궁동	-	2011-12-14	-	200	7	O
						-	135	6	X
						-	150	6	X
						-	125	6	O
124	대전	유성구	외삼동	-	2013-09-24	-	217	6	X
125	대전	유성구	신성동	-	2017-04-05	-	98	5	X
126	경기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	2012-04-01	-	213	10	O
127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	2018-06-12	-	260	7	O
128	충북	진천군	초평면	-	2018-06-12	-	240	7	O
129	충남	홍성군	홍성읍	-	2010-07-01	-	388	7	O
130	경남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	2015-05	-	200	9	O
131	대구	달성	다사읍	-	2016-05-24	-	140	4~6	X
132	인천	서구	석남3동	-	2012-03-16	-	110	6	X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개별처분요구안 (2)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미인가 대안학교 보호구역 지정 제외 불합리**

소 관 기 관 ① 경찰청 ②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① 경찰청 ②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찰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를 신설(1995. 7. 1.)하고, 행정안전부는 2011. 1. 21.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한 후 시장 등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등”이 있는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은 초등학교·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할 시장과 경찰서장 등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보호구역 도로표지·과속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거나 차량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므로 교육관계법령상 특정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이용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시설 가운데 시장 등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주변도로에는 관할 시장 또는 경찰관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속도제한 등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11]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1호부터 제4호 각 시설의 설립 근거법에서 적합하게 인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주변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대안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11)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규정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생활체육시설과 함께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각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와 같은 기타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는 어린이의 이용이 많고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기 곤란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8.~4. 5.) 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중 대안학교[12]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약 600개로 추정되는 전국의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안학교는 대부분 미인가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자료확보가 가능한 78개 미인가대안학교 주변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별표] "미인가대안학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2013~2017년)"과 같이 위 78개교 주변 도로에서 총 68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관할 시장 등은 이들 시설에서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

12)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하여 78개교[13] 모두 2019년 3월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370명에 이르는 규모가 큰 학교이고 [그림]과 같이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는 위 학교가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에서 정한 지정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림] ◆학교 현장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2013~2017년)

<table>
<tr><td></td><td></td></tr>
<tr><td>학교 옆 불법 주정차차량</td><td>2014년 1건, 2017년 1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td></tr>
<tr><td colspan="2">◆학교(초등학생 수 370명,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td></tr>
</table>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미인가대안학교와 같이 교육관계법령에서 적합하게 인허가받지 못한 시설이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들은 어린이의 이용이 많고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없어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3) 78개교 중 13개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문서 또는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미인가라는 사유로 모두 반려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관계기관 의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인가받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법령개정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속도제한이나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는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미인가대안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비를 요청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안학교의 인가 또는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인 경우 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미인가대안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미인가대안학교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2013~2017년)

(단위: 명, 건)

연번	시·도명	학교명	개교일자	유·초등 학생 수	사고발생 건수						보호구역 요청 여부 등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	서울	-	-	초등 53	2	-	-	2	-	-	x
2	서울	-	-	초등 51	1	-	1	-	-	-	o
3	서울	-	-	초등 18	1	-	-	-	-	1	x
4	서울	-	-	초등 10	3	1	2	-	-	-	x
5	부산	-	-	초등 23	1	-	1	-	-	-	x
6	부산	-	-	초등 62	5	2	1	2	-	-	x
7	부산	-	-	초등 10	4	-	2	1	-	1	x
8	부산	-	-	초등 76	1	1	-	-	-	-	x
9	대구	-	-	초등 82	0	-	-	-	-	-	o
10	인천	-	-	초등 24	0	-	-	-	-	-	x
11	인천	-	-	초등 10	1	-	-	-	1	-	o
12	인천	-	-	초등 13	1	-	-	-	-	1	x
13	인천	-	-	초등 77	0	-	-	-	-	-	o
14	인천	-	-	초등 90	1	-	1	-	-	-	x
15	인천	-	-	유치원 30, 초등 20	2	-	1	-	-	1	x
16	인천	-	-	초등 30	2	-	1	-	-	1	x
17	대전	-	-	초등 370	2	-	1	-	-	1	o
18	대전	-	-	초등 17	0	-	-	-	-	-	x
19	대전	-	-	초등 15	6	1	-	1	4	-	x
20	경기	-	-	초등 23	0	-	-	-	-	-	x
21	경기	-	-	초등 79	0	-	-	-	-	-	o
22	경기	-	-	초등 51	0	-	-	-	-	-	x
23	경기	-	-	초등 25	0	-	-	-	-	-	x
24	경기	-	-	초등 10	0	-	-	-	-	-	x
25	경기	-	-	초등 10	0	-	-	-	-	-	x
26	경기	-	-	초등 47	0	-	-	-	-	-	x
27	경기	-	-	초등 25	0	-	-	-	-	-	x
28	경기	-	-	초등 110	0	-	-	-	-	-	x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명	학교명	개교일자	유·초등 학생 수	사고발생 건수						보호구역 요청 여부 등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9	경기	-	-	초등 24	0	-	-	-	-	-	x
30	경기	-	-	초등 146	0	-	-	-	-	-	o
31	경기	-	-	초등 129	0	-	-	-	-	-	o
32	경기	-	-	유치원 75, 초등 95	0	-	-	-	-	-	x
33	경기	-	-	초등 16	0	-	-	-	-	-	x
34	경기	-	-	초등 153	0	-	-	-	-	-	o
35	경기	-	-	초등 12	0	-	-	-	-	-	x
36	경기	-	-	초등 11	4	1	-	-	2	1	x
37	경기	-	-	초등 17	8	2	-	3	1	2	x
38	경기	-	-	초등 16	0	-	-	-	-	-	x
39	경기	-	-	초등 52	2	1	-	1	-	-	x
40	경기	-	-	초등 144	5	2	1	1	-	1	x
41	경기	-	-	초등 39	0	-	-	-	-	-	x
42	경기	-	-	초등 75	0	-	-	-	-	-	x
43	경기	-	-	유치원 100, 초등 67	6	1	2	-	3	-	x
44	경기	-	-	초등 13	2	1	-	-	1	-	x
45	경기	-	-	초등 42	0	-	-	-	-	-	x
46	경기	-	-	초등 54	0	-	-	-	-	-	x
47	경기	-	-	초등 100	0	-	-	-	-	-	o
48	경기	-	-	초등 94	0	-	-	-	-	-	o
49	경기	-	-	초등 57	1	1	-	-	-	-	o
50	경기	-	-	유치원 24, 초등 110	2	1	-	-	-	1	x
51	경기	-	-	초등 80	0	-	-	-	-	-	x
52	경기	-	-	유치원 7, 초등 80	0	-	-	-	-	-	x
53	경기	-	-	초등 44	0	-	-	-	-	-	x
54	경기	-	-	초등 38	0	-	-	-	-	-	x
55	경기	-	-	초등 20	0	-	-	-	-	-	x
56	경기	-	-	초등 12	4	1	2	1	-	-	x
57	경기	-	-	초등 37	0	-	-	-	-	-	x
58	경기	-	-	유치원 5, 초등 29	0	-	-	-	-	-	x
59	경기	-	-	초등 12	0	-	-	-	-	-	x

연번	시·도명	학교명	개교일자	유·초등 학생 수	사고발생 건수						보호구역 요청 여부 등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60	경기	-	-	초등 10	0	-	-	-	-	-	x
61	경기	-	-	초등 42	0	-	-	-	-	-	x
62	경기	-	-	초등 120	0	-	-	-	-	-	x
63	경기	-	-	초등 16	0	-	-	-	-	-	x
64	경기	-	-	유치원 12, 초등 70	0	-	-	-	-	-	x
65	경기	-	-	초등 40	1	-	-	1	-	-	x
66	경기	-	-	유치원 32, 초등 60	0	-	-	-	-	-	o
67	경기	-	-	유치원 9, 초등 43	0	-	-	-	-	-	x
68	강원	-	-	초등 17	0	-	-	-	-	-	x
69	강원	-	-	초등 38	0	-	-	-	-	-	x
70	충남	-	-	초등 38	0	-	-	-	-	-	x
71	충남	-	-	초등 19	0	-	-	-	-	-	x
72	충남	-	-	초등 11	0	-	-	-	-	-	x
73	전남	-	-	초등 48	0	-	-	-	-	-	x
74	전남	-	-	초등 37	0	-	-	-	-	-	x
75	전남	-	-	초등 44	0	-	-	-	-	-	x
76	경남	-	-	유치원 15, 초등 57	0	-	-	-	-	-	x
77	경남	-	-	초등 55	0	-	-	-	-	-	x
78	제주	-	-	초등 31	0	-	-	-	-	-	x

주: 1. 미인가대안학교 정문기준 반경 300m 이내의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조사(2019년 3월 기준)

2. 미인가대안학교는 전국 약 600개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 교육부로부터 자료확보가 가능했던 78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

3. 미인가대안학교 78개교 중 13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으나 반려됨

자료: 교육부 및 도로교통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개별처분요구안 (3)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보행사고 다발지역 속도제한 등 안전조치 미흡**

소 관 기 관 ① 경찰청 ②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① 경찰청 ②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고 도로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의 비중은 40.0%로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OECD 평균 19.7%)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1.1명)의 3배에 이르는 등 보행자 안전은 우리나라 교통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 보행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도심지역 내 차량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행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개선·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2019. 3. 18.~4. 5.) 중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 둔산동에 있는 계룡로네거리 부근에서 최근 3년간 192건의 보행사고가 발생하는 등 [표 1]과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같이 반경 200m 이내에서 최근 3년간(2015~2017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25건 이상 발생한 지역(이하 “보행사고 다발지역”이라 한다)이 전국에 58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간선도로에서의 사고와 함께 이면도로에서의 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었다.

[표 1] 보행사고 다발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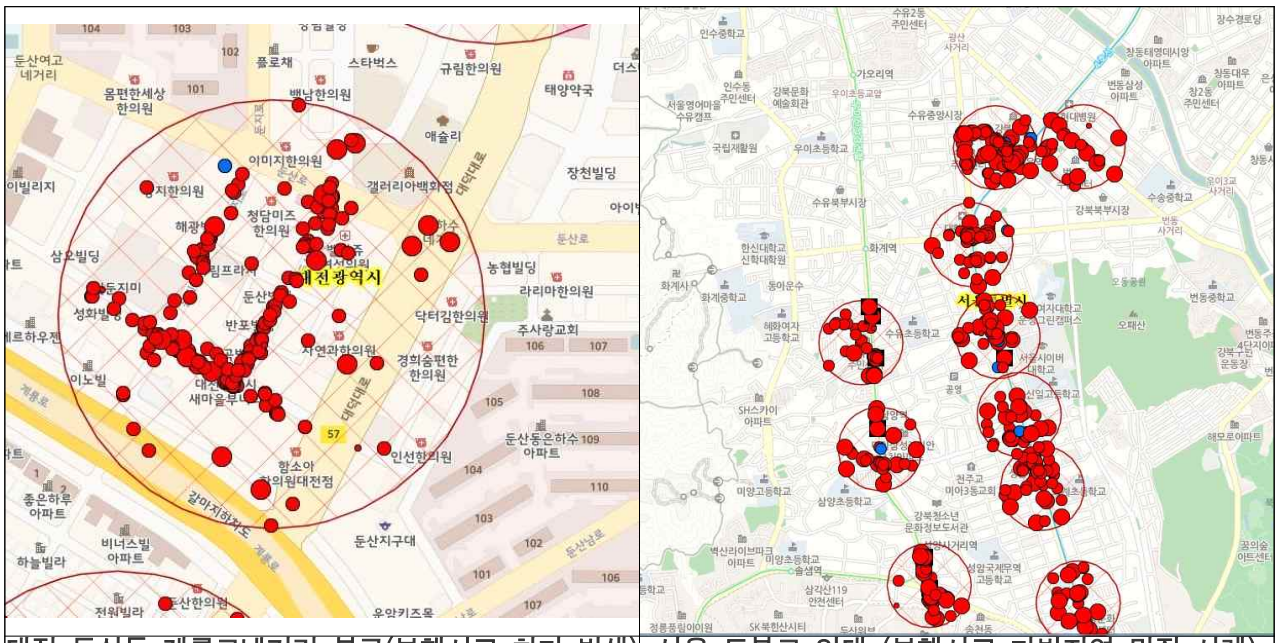
(단위: 개소)

지역	보행사고 다발지역 수	지역	보행사고 다발지역 수
서울	195	제주	16
경기	132	광주	14
부산	57	강원	12
대구	34	전북	11
경남	19	충남	11
경북	19	전남	10
인천	19	충북	10
대전	18	울산	7
합계	**584**	-	-

주: 584개소 보행사고 다발지역의 구체적 현황은 [별표 1] “보행사고 다발지역 상세현황” 참조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그림 1] 보행사고 다발지역 사례



대전 둔산동 계룡로네거리 부근(보행사고 최다 발생) 서울 도봉로 일대 (보행사고 다발지역 밀집 사례)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2. 보행사고 다발지역 속도제한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등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016년부터 [그림 2]와 같이 보행자 이동이 많은 도시지역 내 차량 운행속도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요

▣ **개념**: 보행자 이동이 많은 도심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이면도로 등 안전 위주 도로는 30㎞/h로 하향(소통 위주 도로는 60㎞/h 유지)



▣ **추진현황**

o 이면도로 30㎞/h 제한: 경찰청 지침[14]으로 30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며 법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

o 도시부 50㎞/h 제한: 연구용역과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며, 법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 4. 17. 개정·공포(2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시행 예정)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의 속도를 제한할 때에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행사고 다발지역 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속도제한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적용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에도 보

14)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운영 지침」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행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584개소 보행사고 다발지역에서의 속도제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림 3]와 같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속도제한이 시행 중인 지역은 각각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속도제한이 시행되지 않거나 일부 구간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5]. 또한 경찰청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도 2019년 중 법적 근거 마련, 권역별 협의회 구성, 서울·부산 시범운영 구간 확대 등 계획만 수립하였을 뿐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속도제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3] 보행사고 다발지역 속도제한 현황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가. 판단기준(관계법령)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보행자길

15) 위 실태조사 결과 속도제한을 시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시행 중인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속도제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59%부터 78%까지 속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신설·연결, 차도와 보도의 분리, 교통 정온화[16]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주차환경 개선, 일방통행 도입 등 일정 구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림 4]와 같이 '특별시장 등'[17]이 지정한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을 신청받은 후, 3단계 평가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평가결과를 제출받는 등 위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위 사업은 건 당 사업비가 16억 원부터 20억 원까지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교통약자·보행자 관련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2013년부터 매년 약 10개소씩 사업대상이 선정되어 2019년까지 총 77개 사업이 선정·추진되고 있다.

[그림 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절차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 신청	▸지방자치단체별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시·도별 자체 평가 후 우수 대상지 공모 신청
⇩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 및 자문 실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서면, 현장, 발표)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 선정(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지구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행정안전부)
⇩	
예산의 배정	▸시·도별 공모사업 대상 지역에 사업비(국비) 보조(행정안전부) ※ 사업비는 국비(50%), 지방비(50%)
⇩	
설계 및 공사	▸발주청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설계 및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위 사업을 통해서 보행자의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지역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16)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서행 운전을 유도하는 기법
17)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바람직하다.[18] 그리고 위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이 가급적 많이 사업대상으로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사업 추진 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2] 및 [별표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2013~2019)"과 같이 2013~2019년까지 선정·추진된 77개 사업지역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19]에서 추진된 사업은 31개소(40.3%)에 불과하고 나머지 46개소는 상대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지 않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3~2019년 선정된 총 6건의 사업이 모두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추진된 반면, 서울·경기·대구·강원·전남·전북 등 6개 지역은 대부분의 사업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추진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작성된 효과평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별표 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효과분석(2013~2019)"과 같이 전체 17개 사업[20] 중 사업 시행 이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0% 이상 감소되어 개선효과가 양호한 곳은 4개소에 불과하고,

---

1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는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교통약자의 통행량이 많거나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등에도 지정될 수 있음

19) [표 1]의 '보행사고 다발지역'(전국 584개소)에 해당하는 지역 및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전 3개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30건 이상 발생한 지역. 위 사업 시행지역은 통상적으로 면적이 0.5~1.0㎢ 규모로서, 위 '보행사고 다발지역(반경 200m 이내)보다 넓음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특별시장 등은 사업 완료 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19년 3월 현재 평가보고서가 작성 완료되어 제출된 사업은 17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평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평가 작업 중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나머지 13개소는 사업 전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거의 없거나 발생 건수에 큰 변동이 없는 등 보행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1]

[표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지역의 보행사고 실태

(단위: 개소)

시·도	사업추진 지역	보행사고가 심각한 지역[1]	시·도	사업추진 지역	보행사고가 심각한 지역
서울	5	1	강원	4	0
부산	6	6	충북	8	3
대구	4	1	충남	7	3
인천	1	0	전북	8	1
광주	3	2	전남	4	0
대전	4	2	경북	5	2
울산	3	2	경남	5	3
세종	1	0	제주	5	4
경기	4	1	**합계**	**77**	**31**

주: 1.[표 1]의 '보행사고 다발지역'(전국 584개소) 외 사업 시행 전 3개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30건 이상 발생한 지역 포함
2.각 사업추진지역에서의 보행사고 상세현황은 [별표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2013~2019년)' 참조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보행사고 다발지역 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속도제한이 미흡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추진된 결과 보행사고 취약구간에서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찰청은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속도 하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1) 다만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보행통행량 증가, 차량 통행속도 감소, 불법주정차 감소, 보행자 만족도 증가 등 보행사고 이외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보행사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 위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지역들이 가급적 많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행사고 취약구간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보행사고 발생통계 등을 활용하여 보행사고 다발지역 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우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1]

보행사고 다발지역 상세현황

(단위: 건, 명)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1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종로2가 부근)	79	3	92
2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종로1가 부근)	56	2	57
3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종로3가 부근)	49	0	57
4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동대문로터리 부근)	48	1	50
5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종로5가 부근)	42	1	41
6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학원 부근)	41	0	46
7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7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동묘앞역 부근)	38	2	37
8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8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영도교남단 부근)	33	0	34
9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세종로사거리일반국도6 부근)	32	1	32
10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입구 부근)	29	0	33
11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혜화동대학로진입 부근)	26	0	26
12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인사동네거리 부근)	26	0	26
13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1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한강대로퇴계로진출 부근)	56	2	55
14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2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신당중앙시장 부근)	49	2	50
15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3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숭례문소월길진출 부근)	47	0	48
16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을지로1가남대문로진 부근)	46	1	45
17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5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운동장평화시장 부근)	41	0	45
18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부근)	39	1	41
19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7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퇴계로3가 부근)	32	5	28
20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8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약수역 부근)	32	0	35
21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회현사거리퇴계로진출 부근)	32	0	32
22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이태원역 부근)	81	0	94
23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2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부근)	42	1	48
24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3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81번종점 부근)	37	0	41
25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부근)	36	0	39
26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삼각지역 부근)	28	0	35
27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왕십리역 부근)	38	0	40
28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2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답십리역 부근)	35	0	38
29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건대입구역 부근)	88	0	98
30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자양사거리구의로진출 부근)	36	1	46
31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부근)	98	1	100
32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부근)	76	2	78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33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신설동역 부근)	61	1	66
34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부근)	57	2	63
35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회기역앞 부근)	43	0	48
36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장한로답십리로진입 부근)	42	0	44
37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부근)	39	0	41
38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전농동사거리 부근)	33	1	35
39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천호대로장한로진출 부근)	33	0	34
40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부근)	31	0	32
41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촬영소사거리 부근)	29	0	32
42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부근)	28	1	29
43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외대앞역지하차도서측 부근)	26	0	29
44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사가정역 부근)	71	0	78
45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2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부근)	50	0	52
46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3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면목역 부근)	46	1	46
47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4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부근)	45	1	48
48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5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부근)	43	1	51
49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6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부근)	34	0	38
50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7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부근)	32	0	35
51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부근)	32	0	33
52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9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상봉지하차도삼거리 부근)	31	1	34
53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부근)	31	0	32
54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부근)	29	2	33
55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먹골역 부근)	27	1	29
56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성신여대입구역 부근)	84	0	89
57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부근)	50	1	52
58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종암2치안센터 부근)	38	1	38
59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부근)	34	1	36
60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 (≥ 부근)	34	0	36
61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월곡뉴타운정류장 부근)	34	0	35
62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Å 부근)	30	1	35
63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부근)	28	0	31
64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정릉지구대 부근)	27	1	27
65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돈암로터리 부근)	26	0	29
66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부근)	25	0	26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67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수유역 부근)	129	0	143
68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미아삼거리역 부근)	73	0	75
69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부근)	45	1	49
70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수유사거리 부근)	43	0	47
71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부근)	42	0	47
72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부근)	41	0	47
73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7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삼양사거리 부근)	38	2	40
74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삼양시장 부근)	32	1	32
75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9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부근)	31	3	29
76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부근)	27	0	28
77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부근)	27	0	32
78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창동시장입구 부근)	43	2	46
79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2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창동견인차량보관소 부근)	29	0	29
80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3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부근)	27	2	25
81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부근)	53	0	55
82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노원역 부근)	37	0	46
83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부근)	33	0	34
84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상계역 부근)	29	0	30
85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상계초교입구 부근)	28	1	28
86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부근)	109	0	123
87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2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불광역 부근)	43	2	45
88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응암오거리 부근)	38	1	40
89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구산사거리 부근)	30	1	34
90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부근)	29	0	31
91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부근)	48	1	48
92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부근)	46	1	48
93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부근)	46	0	49
94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굴레방다리 부근)	43	1	42
95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	39	1	41
96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부근)	36	0	41
97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이대역 부근)	31	0	36
98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교남동사무소 부근)	26	0	29
99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부근)	123	0	137
100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홍대입구역 부근)	90	0	98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10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부근)	46	0	49
102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4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합정역 부근)	41	3	38
103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부근)	40	1	42
104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서교사거리 부근)	38	1	44
105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서강로마포로진출로 부근)	31	0	34
106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F 부근)	31	0	34
107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동교동삼거리 부근)	25	0	27
108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부근)	50	0	53
109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신정네거리역 부근)	43	0	45
110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염창동우체국 부근)	36	0	38
111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신월사거리 부근)	35	1	36
112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부근)	28	1	30
113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부근)	27	0	27
114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신월정수사업소앞 부근)	25	0	27
115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신월지하차도남측 부근)	25	0	27
116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화곡사거리 부근)	60	0	64
117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우장공원입구 부근)	51	1	60
118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목동사거리 부근)	43	2	43
119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부근)	41	0	42
120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부근)	34	1	37
121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부근)	30	0	32
122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우장산역 부근)	30	0	30
123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부근)	26	1	28
124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부근)	25	0	26
125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부근)	73	1	75
126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부근)	42	0	42
127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구로4동우체국 부근)	40	1	42
128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남구로역 부근)	36	0	39
129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구로구청앞 부근)	32	1	34
130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공단오거리 부근)	28	1	31
131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7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개봉사거리 부근)	26	0	28
132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부근)	26	0	28
133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부근)	25	0	26
134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금천우체국사거리 부근)	34	0	42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135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부근)	33	0	36
136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부근)	26	1	26
137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부근)	92	1	96
138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영등포역 부근)	72	2	73
139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영등포시장앞 부근)	47	0	49
140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대림역 부근)	41	0	43
141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당산역 부근)	31	1	32
142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31	1	32
143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고가차도남측 부근)	29	0	29
144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영등포구청 부근)	26	1	27
145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상도3동주민센터 부근)	86	0	92
146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국민은행사당동지점 부근)	75	3	78
147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부근)	61	0	64
148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명수대상가 부근)	53	1	55
149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장승배기 부근)	44	1	47
150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目 부근)	44	0	46
151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사당시장 부근)	32	0	34
152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신림역 부근)	75	1	82
153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구로전화국 부근)	49	1	56
154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패션거리입구 부근)	44	2	43
155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	44	1	44
156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	42	0	46
157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서울대입구역 부근)	41	1	45
158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부근)	41	0	43
159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현대시장입구 부근)	37	4	36
160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신성교남단 부근)	33	0	33
161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낙성대역 부근)	32	0	34
162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부근)	29	1	31
163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동빌딩앞삼성고객프 부근)	144	1	154
164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부근)	96	1	108
165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이수역 부근)	77	2	81
166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반포쇼핑센타 부근)	41	0	44
167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부근)	31	0	38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168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부근)	27	0	30
169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부근)	26	1	25
170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양재지하차도서측 부근)	25	1	24
171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기독교TV 부근)	79	1	82
172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역삼역 부근)	66	0	70
173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국기원입구 부근)	61	0	63
174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교보타워사거리 부근)	59	3	56
175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근)	50	0	51
176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국민연금관리공단 부근)	41	0	44
177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7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수서역 부근)	39	1	41
178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부근)	34	0	36
179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부근)	29	0	30
180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부근)	93	0	102
181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A 부근)	91	0	94
182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가락본동우체국 부근)	33	0	36
183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잠실역 부근)	32	2	40
184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5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천호대로올림픽로진입 부근)	31	1	31
185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B 부근)	30	2	31
186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삼전사거리 부근)	30	1	32
187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8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방이사거리 부근)	30	0	32
188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백제고분군 부근)	26	0	28
189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마천사거리 부근)	25	0	25
190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길동사거리 부근)	66	1	70
191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천호시장 부근)	65	0	70
192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천호신사거리 부근)	56	1	59
193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C 부근)	39	3	41
194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D 부근)	36	0	41
195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6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명일역 부근)	30	0	31
196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1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남포사거리 부근)	73	0	78
197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2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1가(부평교차로 부근)	41	1	49
198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3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보수사거리 부근)	33	1	34
199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1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채소가게 부근)	26	1	29
200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2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부용사거리 부근)	25	1	2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201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1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부산역 부근)	56	2	59
202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2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범일2동 부근)	46	1	49
203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3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수정시장앞사거리 부근)	46	0	48
204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E 부근)	43	0	44
205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1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대교사거리 부근)	39	0	41
206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2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봉래교차로 부근)	31	1	37
207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F 부근)	131	0	145
208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G 부근)	98	2	107
209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H 부근)	66	3	66
210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부전시장 부근)	49	2	48
211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I 부근)	45	1	46
212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광무교북측 부근)	28	3	27
213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부산양정동우체국 부근)	26	1	27
214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J 부근)	25	0	29
215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충렬교 부근)	71	0	74
216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2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서원시장 부근)	35	0	36
217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3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K 부근)	27	0	27
218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L 부근)	27	0	29
219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5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M 부근)	26	0	28
220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용소삼거리 부근)	63	0	64
221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2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대연사거리 부근)	51	2	49
222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못골역 부근)	29	1	33
223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N 부근)	29	0	31
224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덕천교차로 부근)	62	0	70
225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구포시장 부근)	42	3	45
226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ㅇ 부근)	37	2	36
227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O 부근)	32	0	35
228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P 부근)	31	0	34
229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Q 부근)	26	0	27
230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R 부근)	25	0	26
231	부산	부산광역시 사하구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하단소방파출소 부근)	53	0	56
232	부산	부산광역시 사하구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S 부근)	36	0	41
233	부산	부산광역시 사하구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T 부근)	28	0	30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234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1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U 부근)	59	0	63
235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V 부근)	53	0	58
236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3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W 부근)	34	0	36
237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금사교차로 부근)	31	1	31
238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X 부근)	28	2	27
239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구서전철서로삼거리 부근)	28	1	29
240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7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금정교북측 부근)	27	1	28
241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연일시장 부근)	74	0	80
242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Y 부근)	42	2	44
243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Z 부근)	30	0	30
244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AA 부근)	26	3	24
245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AB 부근)	65	0	68
246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2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AC 부근)	38	0	41
247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3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AD 부근)	28	1	29
248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4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대남지하차도남측 부근)	28	0	28
249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서부터미널 부근)	62	2	64
250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2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AE 부근)	34	0	34
251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3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AF 부근)	33	0	35
252	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AG 부근)	34	0	37
253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1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AH 부근)	178	1	193
254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2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AI 부근)	98	0	104
255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3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중앙치안센터 부근)	54	2	59
256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4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중앙네거리 부근)	42	0	48
257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5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큰장삼거리 부근)	37	0	37
258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고속버스터미널 부근)	31	0	33
259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큰고개오거리 부근)	25	1	24
260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서부시장입구 부근)	27	0	28
261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팔달네거리 부근)	26	0	27
262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북비산네거리 부근)	25	1	25
263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성당네거리 부근)	47	2	49
264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영대네거리 부근)	30	1	30
265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AJ삼거리 부근)	26	1	25
266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칠성시장네거리 부근)	52	0	59
267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경대북문 부근)	28	0	32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268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3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공원네거리 부근)	27	1	28
269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4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AK 부근)	26	0	26
270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5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복현오거리 부근)	25	0	27
271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범물네거리 부근)	41	0	42
272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매호네거리 부근)	38	2	38
273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황금네거리 부근)	28	2	29
274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만촌네거리 부근)	27	1	26
275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AL 부근)	67	1	71
276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2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상인네거리 부근)	50	0	52
277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3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AM 부근)	40	1	43
278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4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AN 부근)	38	1	40
279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5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송현1동파출소 부근)	31	0	32
280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6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AO 부근)	30	2	30
281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AP 부근)	30	0	33
282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8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월촌역네거리 부근)	29	1	33
283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9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감삼사거리 부근)	27	1	27
284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10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AQ 부근)	26	0	28
285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11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용산네거리 부근)	25	3	22
286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AR 부근)	26	1	27
287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주안역삼거리 부근)	65	0	69
288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AS사거리 부근)	31	2	30
289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진흥사거리 부근)	30	0	41
290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주안4동우편취급소 부근)	30	0	31
291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ᄒᆞ 부근)	30	0	38
29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간석시장사거리 부근)	37	0	39
293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AT 부근)	34	1	37
294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AU 부근)	31	1	35
295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구월사거리 부근)	25	0	27
296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부평역사거리 부근)	87	0	101
297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부흥오거리 부근)	33	0	38
298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시장역오거리 부근)	31	1	38
299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AV사거리 부근)	28	1	29
300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5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AW 부근)	28	0	34
301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교대사거리 부근)	35	0	36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302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2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병방사거리 부근)	32	1	32
303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작전역3번출구 부근)	26	1	28
304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연희사거리 부근)	30	0	31
305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신현사거리 부근)	26	1	27
306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1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1가(AX 부근)	53	0	62
307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AY 부근)	65	0	80
308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2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염주동사거리 부근)	32	1	34
309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3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상무지구입구 부근)	30	3	31
310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양동 부근)	27	2	25
311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5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AZ 부근)	25	1	28
312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1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백운교차로 부근)	32	3	31
313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BB 부근)	25	0	25
314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1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BA 부근)	42	1	43
315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2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뷰비 부근)	36	0	37
316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3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BC 부근)	34	0	35
317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4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BD 부근)	33	0	34
318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5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BE 부근)	30	0	33
319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1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BF 부근)	26	1	29
320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고속터미널삼거리 부근)	39	0	42
321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2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대전역네거리 부근)	37	3	34
322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3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원동삼거리 부근)	33	0	37
323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4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외국인학교삼거리 부근)	26	0	27
324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1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은행사거리 부근)	58	0	63
325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2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BG삼거리 부근)	32	1	34
326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3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보문오거리 부근)	27	0	28
327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계룡로네거리 부근)	192	0	207
328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2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탄방네거리 부근)	45	0	47
329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BH 부근)	37	0	43
330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4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경성큰마을네거리 부근)	33	0	38
33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5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도마네거리 부근)	26	1	26
332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6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BI네거리 부근)	26	1	25
333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파랑새네거리 부근)	25	1	27
334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BJ 부근)	38	1	38
335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유성삼거리 부근)	36	0	36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336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3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BK삼거리 부근)	35	1	37
337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1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BL삼거리 부근)	27	2	27
338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BM 부근)	38	0	40
339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2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BN 부근)	32	1	31
340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1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BO 부근)	78	0	87
341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BP 부근)	41	0	44
342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BQ 부근)	38	0	44
34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남부경찰서앞 부근)	31	0	34
344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BR 부근)	26	0	26
345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BS사거리 부근)	45	1	48
346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율전파출소 부근)	43	0	44
347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장안문로터리 부근)	42	0	50
348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구파장사거리 부근)	31	0	32
349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보건환경연구원앞 부근)	28	2	28
350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BT 부근)	28	1	29
351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BU 부근)	26	0	27
352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BV 부근)	25	0	25
353	경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구운사거리 부근)	27	1	29
354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	138	1	148
355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BW 부근)	57	0	61
356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부근)	45	2	51
357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육교사거리 부근)	35	3	33
358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중동삼거리 부근)	35	1	37
359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매산지구대 부근)	32	2	31
360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화서오거리 부근)	30	1	29
361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시청지하차도 부근)	29	2	29
362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지동사거리 부근)	26	1	25
363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BX삼거리 부근)	32	1	31
364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탄리사거리 부근)	77	1	77
365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중앙시장사거리 부근)	64	1	65
366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신흥사거리 부근)	53	0	55
367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BY사거리 부근)	34	4	34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368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시청삼거리 부근)	33	3	33
369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BZ 부근)	31	0	38
370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CA 부근)	25	1	25
371	경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모란삼거리 부근)	103	0	109
372	경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CB 부근)	50	2	52
373	경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상대원시장앞 부근)	43	0	48
374	경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CC앞사거리 부근)	41	3	39
375	경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CD 부근)	41	1	41
376	경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운동장사거리 부근)	30	1	31
377	경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대원사거리 부근)	28	0	31
378	경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상공회의소앞사거리 부근)	27	0	27
379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CE 부근)	38	0	38
380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아름방송 부근)	28	0	30
381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야탑역4번출구 부근)	27	1	34
382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미금역사거리 부근)	25	0	25
383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CF 부근)	93	1	97
384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흥선지하차도 부근)	44	0	48
385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CG 부근)	37	1	40
386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4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파발로터리 부근)	36	1	36
387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가능역앞 부근)	29	0	29
388	경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CH삼거리 부근)	35	1	36
389	경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안양역광장 부근)	31	0	36
390	경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박달사거리 부근)	25	1	26
391	경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CI 부근)	54	2	53
392	경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봉천동3거리 부근)	31	0	32
393	경기	경기도 부천시1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부천북부역사거리 부근)	123	0	126
394	경기	경기도 부천시2	경기도 부천시 중동(CJ삼거리 부근)	57	0	60
395	경기	경기도 부천시3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복개천사거리 부근)	51	1	55
396	경기	경기도 부천시4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부천남부역사거리 부근)	51	0	56
397	경기	경기도 부천시5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원종사거리 부근)	46	1	45
398	경기	경기도 부천시6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역곡남부역사거리 부근)	45	1	47
399	경기	경기도 부천시7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소신여객정류장앞 부근)	45	1	47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400	경기	경기도 부천시8	경기도 부천시 상동(석천사거리 부근)	40	0	41
401	경기	경기도 부천시9	경기도 부천시 상동(무지개고가사거리 부근)	33	3	33
402	경기	경기도 부천시10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심곡고가사거리 부근)	33	2	32
403	경기	경기도 부천시11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멀뫼사거리 부근)	32	1	40
404	경기	경기도 부천시12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무일로접속2 부근)	30	3	32
405	경기	경기도 부천시13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전화국사거리 부근)	30	2	30
406	경기	경기도 부천시14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조마루4거리 부근)	26	1	27
407	경기	경기도 부천시15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CK사거리 부근)	25	1	28
408	경기	경기도 부천시16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원미사거리 부근)	25	0	30
409	경기	경기도 광명시1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철산역 부근)	58	0	61
410	경기	경기도 광명시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광명사거리 부근)	47	0	51
411	경기	경기도 광명시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광명6동삼거리 부근)	42	0	49
412	경기	경기도 광명시4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하안사거리 부근)	41	1	48
413	경기	경기도 광명시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CL 부근)	41	0	45
414	경기	경기도 광명시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CM 부근)	34	2	34
415	경기	경기도 광명시7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시청사거리 부근)	28	0	29
416	경기	경기도 광명시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CN 부근)	27	2	26
417	경기	경기도 평택시1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중앙2로평택로32번길사거리 부근)	84	2	87
418	경기	경기도 평택시2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송탄출장소사거리 부근)	57	0	61
419	경기	경기도 평택시3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농협사거리 부근)	45	0	52
420	경기	경기도 평택시4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CO사거리 부근)	37	0	41
421	경기	경기도 평택시5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송북동보건소A 부근)	35	1	34
422	경기	경기도 평택시6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CP 부근)	30	0	31
423	경기	경기도 동두천시1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CQ 부근)	26	0	26
424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상록수역사거리 부근)	53	0	56
425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CR 부근)	28	1	28
426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CS 부근)	67	1	70
427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CT 부근)	32	1	32
428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CU 부근)	30	0	35
429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화정역앞 부근)	38	0	41
430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CV 부근)	28	2	28
431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CW 부근)	27	1	28
432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CX 부근)	26	1	26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433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사거리 부근)	37	0	37
434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장항치안센터사거리 부근)	36	1	39
435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종합터미널앞1 부근)	36	0	39
436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대화역앞 부근)	34	3	37
437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의용소방대앞 부근)	33	1	34
438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CY 부근)	29	1	35
439	경기	경기도 구리시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돌다리사거리 부근)	47	1	50
440	경기	경기도 구리시2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수택동사거리 부근)	36	0	36
441	경기	경기도 구리시3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세무서사거리 부근)	29	0	32
442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CZ 부근)	37	1	36
443	경기	경기도 오산시1	경기도 오산시 원동(DA 부근)	41	0	43
444	경기	경기도 오산시2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DB 부근)	29	0	30
445	경기	경기도 오산시3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DC사거리 부근)	25	1	28
446	경기	경기도 시흥시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DD 부근)	61	0	65
447	경기	경기도 시흥시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신천사거리 부근)	42	1	44
448	경기	경기도 시흥시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DE 부근)	40	0	41
449	경기	경기도 시흥시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DF사거리 부근)	35	0	38
450	경기	경기도 시흥시5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도일삼거리 부근)	30	0	31
451	경기	경기도 시흥시6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대야오거리 부근)	28	2	34
452	경기	경기도 시흥시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정왕역앞 부근)	25	2	26
453	경기	경기도 군포시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금정역삼거리 부근)	43	2	47
454	경기	경기도 군포시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군포우체국 부근)	35	2	35
455	경기	경기도 군포시3	경기도 군포시 당동(당동우체국사거리 부근)	33	1	32
456	경기	경기도 하남시1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신장사거리 부근)	45	1	45
457	경기	경기도 하남시2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무역프라자B 부근)	39	0	39
458	경기	경기도 하남시3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광진교앞사거리 부근)	27	1	28
459	경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용인사거리 부근)	29	1	32
460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DG 부근)	43	0	44
461	경기	경기도 파주시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DH 부근)	52	1	56
462	경기	경기도 파주시2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DI 부근)	31	1	32
463	경기	경기도 파주시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DJ 부근)	31	0	34
464	경기	경기도 이천시1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중앙사거리 부근)	44	0	49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465	경기	경기도 이천시2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DK앞교차로 부근)	41	1	42
466	경기	경기도 이천시3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터미널사거리 부근)	41	1	41
467	경기	경기도 안성시1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중앙로 부근)	35	2	33
468	경기	경기도 김포시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마송우회도로사거리 부근)	31	1	30
469	경기	경기도 김포시2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사우공원앞 부근)	25	0	25
470	경기	경기도 화성시1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DL 부근)	38	1	39
471	경기	경기도 화성시2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남양교차로 부근)	27	0	27
472	경기	경기도 화성시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DM 부근)	26	0	29
473	경기	경기도 화성시4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병점사거리 부근)	26	0	27
474	경기	경기도 광주시1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경안동공영주차장 부근)	45	0	48
475	경기	경기도 광주시2	경기도 광주시 역동(DN 부근)	43	1	48
476	경기	경기도 양주시1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DO 부근)	26	1	26
477	강원	강원도 춘천시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DP 부근)	31	0	34
478	강원	강원도 원주시1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DQ 부근)	81	0	88
479	강원	강원도 원주시2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자유시장 부근)	53	1	55
480	강원	강원도 원주시3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DR 부근)	35	1	35
481	강원	강원도 원주시4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맘보 부근)	27	0	27
482	강원	강원도 원주시5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DS 부근)	27	0	27
483	강원	강원도 원주시6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농협 부근)	26	1	26
484	강원	강원도 원주시7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DT 부근)	26	0	29
485	강원	강원도 원주시8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DU 부근)	25	1	27
486	강원	강원도 강릉시1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옥천오거리 부근)	38	1	39
487	강원	강원도 동해시1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DV 부근)	30	1	30
488	강원	강원도 태백시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황지교사거리 부근)	27	0	27
489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DW 부근)	48	1	54
49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청원군청앞 부근)	31	0	35
491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DX 부근)	43	0	44
492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사창사거리 부근)	30	3	41
493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진재마루길신흥1로 부근)	36	0	42
49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터미널앞사거리 부근)	29	2	27
495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산업단지육거리 부근)	29	1	31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496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1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2가(제천TTC앞 부근)	28	1	32
497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2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DY 부근)	26	0	27
498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3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역전교차로 부근)	25	1	29
499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DZ 부근)	49	0	49
500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EA 부근)	34	0	38
501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EB 부근)	26	0	27
50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EC 부근)	108	0	117
503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1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ED 부근)	30	0	30
504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2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EF 부근)	28	1	27
505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1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EG 부근)	38	0	40
506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2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EH 부근)	27	0	27
507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1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동문동사거리 부근)	54	1	57
508	충남	충청남도 당진시1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리(북문삼거리 인근)	34	0	36
509	충남	충청남도 당진시2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당진2교교차로 부근)	27	0	31
51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꽃밭정이네거리 부근)	31	1	33
51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어은터널사거리 부근)	28	1	30
512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EI 부근)	25	2	24
513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1	전라북도 군산시 장재동(군산역앞사거리 부근)	43	4	42
514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수송택지E 부근)	30	0	32
515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1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오피스존 부근)	39	0	42
516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2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슐탄 부근)	34	0	36
517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3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EJ 부근)	30	0	34
518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4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하나로사거리 부근)	30	0	34
519	전북	전라북도 김제시1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EK 부근)	25	0	26
520	전북	전라북도 부안군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백산사거리 부근)	28	0	28
521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옷가게 부근)	26	0	29
522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1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여수권관리공단앞 부근)	62	1	69
523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2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여수중부새마을금고 부근)	48	3	46
524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3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EL 부근)	44	1	47
525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4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서교동로타리 부근)	37	4	36
526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새샘전앞 부근)	34	1	38
527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2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26	2	24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남부시장사거리아랫시장 부근)			
528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3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웃시장 부근)	26	0	29
529	전남	전라남도 화순군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EM 부근)	26	0	30
530	전남	전라남도 영광군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터미널사거리 부근)	25	1	30
531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죽도1동사무소입구교차로 부근)	25	0	26
532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오거리 부근)	35	2	35
533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EN 부근)	25	0	25
534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 (수협죽도지점앞교차로 부근)	25	0	29
535	경북	경상북도 경주시1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북정로3 부근)	47	0	49
536	경북	경상북도 경주시2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금성로4 부근)	30	1	31
537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1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육소간앞 부근)	35	0	38
538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2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동(서부초교 부근)	34	0	37
539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3	경상북도 안동시 남문동(삼산 부근)	32	1	33
540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4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옥동3주공교차로 부근)	32	0	34
541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5	경상북도 안동시 남문동(목성교사거리 부근)	31	3	30
542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1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EO 부근)	37	1	39
543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2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EP 부근)	31	0	36
544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3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EQ 부근)	25	1	26
545	경북	경상북도 영주시1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구성오거리 부근)	36	1	36
546	경북	경상북도 영주시2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ER 부근)	27	0	29
547	경북	경상북도 영천시1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ES 부근)	39	0	39
548	경북	경상북도 문경시1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ET 부근)	30	0	30
549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EU 부근)	55	0	61
550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남측교차로 부근)	43	0	45
551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4가 (EV교차로 부근)	47	0	49
552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EW교차로 부근)	43	0	47
553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역전1 부근)	32	0	33
554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1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평안광장앞 부근)	43	2	44
555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2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구부산교통사거리 부근)	30	2	30
556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3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중안 부근)	25	1	25
557	경남	경상남도 통영시1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무전사거리 부근)	51	0	53
558	경남	경상남도 통영시2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EX 부근)	50	1	51

연번	시·도	시·군·구 및 지역번호[주)]	지역 위치	발생 건수	사망 자 수	부상 자 수
559	경남	경상남도 통영시3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EY 부근)	41	2	41
560	경남	경상남도 통영시4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EZ 부근)	31	1	32
561	경남	경상남도 통영시5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FA 부근)	26	0	28
562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1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FB사거리 부근)	41	1	46
563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2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FC사거리 부근)	38	0	41
564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3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FD교차로 부근)	35	0	37
565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4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FE사거리 부근)	26	0	29
566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고현사거리 부근)	66	0	71
567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버스터미널앞 부근)	38	1	38
568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1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FF 부근)	30	0	31
56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제주시청서측 부근)	62	0	64
57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FG 부근)	57	0	59
57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FH 부근)	48	0	52
57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중앙로1 부근)	41	0	41
57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동문로타리1 부근)	38	1	37
57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인제사거리 부근)	37	3	38
57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제주노형우체국 부근)	35	1	37
57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FI 부근)	35	1	39
57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제주일보사거리 부근)	33	2	35
57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FJ 부근)	31	2	29
5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FK 부근)	30	0	31
58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일도이동사무소 부근)	25	1	26
58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FL 부근)	25	1	28
58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FM 부근)	67	0	77
58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중앙로타리 부근)	35	1	38
58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FN 부근)	28	0	31

주: '시·군·구 및 지역번호'와 '지역위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보행사고 다발지역 목록의 표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 TAAS의 보행사고 다발지역 목록에서 각 지역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이 지도상에 확대 표시됨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13~2019년)

(단위: 년, 건)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 연도	보행사고 다발지역 (584개소) 해당여부		사업 전 3년간 보행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여부	지역번호	건수	해당연도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6	×		15	2013~2015
	용산구	세계음식문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3	×		5	2010~2012
	성북구	성북역사문화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3, 2014	×		4	2010~2012
	광진구	면목로 일대	2019	×		38	2015~2017
	관악구	당곡2길 일대	2019	×		0	2015~2017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5	○	북구 1		
	동구	범일동 조방앞 친구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6	○	동구 2		
	동래구	돌아와요 온천장에 어울림거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7	○	동래구 4 일부		
	동구	수정동 청마 시인의 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8	○	동구 1		
	해운대구	해운대 애향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9	○	해운대 1, 4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9	○	연제구 1		
대구	북구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3, 2014	○	북구 2		
	달성군	현풍면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4	×		10	2011~2013
	달서구	성서아울렛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6	×		11	2013~2015
	동구	해안지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9	×		23	2015~2017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2017	×		8	2014~2016
광주	동구	문화전당권역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4	○	동구 1 일부		
	북구	전남대 후문 일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5	○	북구 1		
	동구	동명동 사업	2019	×		23	2015~2017
대전	유성구	궁동지구 1단계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4	○	유성구 3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 연도	보행사고 다발지역 (584개소) 해당여부		사업 전 3년간 보행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여부	지역번호	건수	해당연도
대전	유성구	궁동지구 2단계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5	○	유성구 3		
	유성구	어은동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9	×		24	2015~2017
	대덕구	대청길 사업	2013	×		3	2010~2012
울산	중구	원도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4	×		27	2011~2013
	남구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9	○	남구 4		
	중구	젊음의 거리	2017	○	중구 2		
세종	조치원읍	왕성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8	×		6	2015~2017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북초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8	○	부천시 14		
	양평군	문화관광형시장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5	×		7	2012~2014
	여주시	선비길 보행환경조성사업	2016	×		12	2013~2015
	양주시	백석읍 방성지구 보행자길 사업	2014	×		6	2011~2013
강원	원주시	대학로 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6	×		4	2013~2015
	영월군	도심향기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5	×		12	2012~2014
	양구군	해시계로 보행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3, 2014	×		2	2010~2012
	강릉시	포남2동 일원 사업	2019	×		9	2015~2017
충북	청주시	분평동 주거지역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3	×		8	2010~2012
	충주시	젊음의 거리 관아골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5	×		24	2012~2014
	청주시	용암동 보행환경조성사업	2018	×		31	2015~2017
	청주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2016	○	서원구 1,2		
	제천시	중앙공원 카페거리 조성사업	2014	○	제천시 1		
	보은군	속리산 사업	2019	×		28	2015~2017
	영동군	영동읍 사업	2019	×		21	2015~2017
	진천군	광혜원지구 사업	2019	×		24	2015~2017
충남	천안시	흥이 넘치는 젊음의 신부문화거리	2017	○	동남구 1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 연도	보행사고 다발지역 (584개소) 해당여부		사업 전 3년간 보행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여부	지역번호	건수	해당연도
충남	서산시	중심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3, 2014	×		11	2010~2012
	당진시	당진시장지구	2016	○	당진시 2		
	홍성군	홍주성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9	×		36	2015~2017
	본청	홍성읍~내포신도시 사업	2015	×		1	2012~2014
	홍성군	친환경 농업메카 홍동길 사업	2014	×		0	2011~2013
	예산군	임성동 옛고을길 사업	2019	×		9	2015~2017
전북	남원시	죽항동충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3, 2014	×		2	2010~2012
	진안군	진안읍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6	×		10	2013~2015
	임실군	임실읍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5	×		5	2012~2014
	고창군	고창읍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4	×		2	2011~2013
	부안군	부안군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7	×		24	2014~2016
	전주시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조성사업	2018	×		42	2015~2017
	남원시	용성로 사업	2019	×		12	2015~2017
	전주시	객사길 사업	2019	×		19	2015~2017
전남	구례군	구례읍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8	×		18	2015~2017
	화순군	화순읍 중심부,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6	×		20	2013~2015
	곡성군	곡성읍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7	×		7	2014~2016
	순천시	도사지구 사업	2014	×		5	2011~2013
경북	영주시	하망지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4	×		8	2011~2013
	영천시	완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3, 2014	×		3	2010~2012
	경산시	활기찬 물빛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6	×		36	2013~2015
	고령군	다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9	×		34	2015~2017
	영덕군	영덕읍지구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8	×		19	2015~201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초교 및 경남은행 주변지역	2014	×		32	2011~2013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 연도	보행사고 다발지역 (584개소) 해당여부		사업 전 3년간 보행사고 발생 현황	
				해당 여부	지역번호	건수	해당연도
경남	거제시	고현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7	○	거제 2		
	밀양시	전통시장 및 영남루 보행환경 개선지구	2015	×		9	2012~2014
	김해시	봉리단길 사업	2019	×		20	2015~2017
	고성군	고성시장 주변 사업	2019	×		45	2015~2017
제주	서귀포시	홍중로지구	2015, 2016	×		5	2012~2014
	제주시	임항로지구	2017	○	제주시 10		
	제주시	일주서로(외도지구) 지구	2018	×		38	2015~2017
	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2019	×		30	2015~2017
	본청	탐라문화광장지구	2013, 2014	○	제주시 4,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효과분석(2013~2019년)

사업연도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기간	효과분석 결과 (보행사고, 보행량, 만족도 등)
2016년	부산	동구	조방앞 친구의 거리 조성사업	'16.01.~ '17.07.	ㅇ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10.7건(사업전 3년 평균) → 8건 (사업후 1년)으로 25.2% 감소 ㅇ보행 통행량 증가 - (평일 기준) 보행량 11.0% 증가 (27,235인→30,228인) - (주말 기준) 보행량 22.1% 증가 (13,888인→16,952인)
	충북	청주시	충북대 중문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16.01.~ '16.12.	ㅇ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8.6건(사업전 3년 평균) → 8건 (사업후 1년)으로 7%감소 ㅇ보행 통행량 증가(8,693인/시→9,873인/시, 14% 증가) ㅇ불법 주정차 감소(201대→82대, 59% 감소)
2015년	경기	양평군	문화관광형 시장길 보행환경 조성사업	'15.01.~ '16.04.	ㅇ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2.3건(사업전 3년 평균)→2건 (사업 후 1년)으로 13% 감소 ㅇ보행 통행량 증가(216인/시 증가) ㅇ불법 주정차 감소(16.3% 감소, 70대) ㅇ차량 통행속도 감소(0.8㎞/h 감소) ㅇ만족도 81.5% 증가(시행 전 33.6점→시행 후 61점)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5.12.~ '16.12.	ㅇ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15건(사업전 3년 평균) → 11건 (사업후 1년)으로 26.7% 감소 ㅇ보행 통행량 증가(1,259인/시→1,557인/시, 24% 증가) ㅇ보행 만족도 증가(27.7점/100점→46.9점/100점, 69% 증가) ㅇ차량 통행속도 감소(17㎞/h→15㎞/h, 9% 감소)
2014년	대구	달성군	현풍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4.03.~ '16.11.	ㅇ보행 통행량 증가(471인/시→616인/시, 31% 증가) ㅇ불법 주정차 감소(112대→33대 , 71% 감소) ㅇ보행 만족도 증가(43.1점/100점→66.8점/100점, 55% 증가)
	광주	동구	문화전당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4.03.~ '17.06.	ㅇ보행 통행량 증가 - (평일 기준) 944인/시→1,147인/시, 22% 증가 - (주말 기준) 991인/시→1,306인/시, 32% 증가 ㅇ불법 주정차 감소(94대→62대, 34% 감소) ㅇ보행 만족도 증가(46.8점/100점→63.8점/100점, 17% 증가)
	대전	유성구	궁동지구 1,2단계 보행환경 개선사업	'14.03.~ '15.11.	ㅇ교통사고 7건→9건(28.6% 증가) ㅇ보행 통행량 증가 - (평일 기준) 14.9~18.9% 증가 - (주말 기준) 4.9~19.7% 증가 ㅇ차량 통행량 감소 - (평일 기준) 4.7~17.8% 감소 (주말 기준) 1.7~16.2% 감소 ㅇ차량 통행속도 감소 - (평일 기준) 4.0~12.6% 증가 (주말 기준) 4.3~10.3% 증가
	충북	제천시	중앙공원 카페거리 조성사업	'14.11.~ '16.05.	ㅇ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0.3건(사업전 3년 평균) → 0건 (사업후 1년)으로 감소 ㅇ보행 통행량 약 10% 증가 ㅇ불법 주정차 차량대수 감소
	울산	중구	원도심 옛 명성회복 보행환경 개선사업	'15.01.~ '15.11.	ㅇ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9건(사업전 3년 평균) → 3건 (사업후 1년)으로 66.7% 감소 ㅇ보도 신설 등으로 보행 통행량 첨두시 4.7배 증가 (514명→2,913명) - 당초 사업 대상지 내 보도는 없었으나, 보도 1㎞ 신설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사업연도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기간	효과분석 결과 (보행사고, 보행량, 만족도 등)
2014년	충남	홍성군	친환경 농업메카 홍동길 보행환경 조성사업	'14.02.~ '15.06.	○차량 속도 전 구간 감소 ○보행 통행량 증가 ○보행 만족도 증가(2.3점/5점→3.4점/5점, 48% 증가)
	전남	순천시	도사지구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	'14.01.~ '15.06.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1.6건(사업전 3년 평균) → 0건 (사업후 1년)으로 감소 ○보행 통행량 증가 및 차량속도 감소 ○횡단시설 추가 설치로 보행접근성 향상 ○보행 만족도 증가로 쾌적성·안전성 향상
2013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보행전용길 조성사업	'13.08~' 13.10.	○보행 통행량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평일 첨두시간[주] 보행량) 2,704인/시→7,099인/시로 증가 - (주말 첨두시간 보행량) 5,752인/시→17,961인/시로 증가 -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한 '차없는 보행전용거리' 운영(금~일 16~24시)으로 보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
	대구	북구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13.02.~ '15.03.	○보행사고: 사업 전 39.6건→사업 후 39건(1.5% 감소) – 다만 전체 교통사고는 163.7건→130건으로 감소(20.6% 감소) ○보행 통행량 증가(7,516인/시→7,897인/시, 5% 증가) ○보행 만족도 증가(46점/100점→70점/100점, 52% 증가)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로 해시계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4.01.~ '15.09.	○보행 통행량 증가(538인/시→645인/시, 20% 증가) ○보행 만족도 증가(40.8점/100점→49.5점/100점, 9% 증가) ○차량 주행속도 감소(30.8km→24.3km, 21.1% 감소) ○차량 교통량 감소(173대/시→145대/시, 16.2% 감소)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0.7건(사업전 3년 평균) → 0건 (사업 후 1년)으로 감소
	충북	청주시	주거지역 지구내 보행환경 조성사업	'13.12.~ '14.08.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2.7건(사업전 3년 평균) → 0건 (사업후 1년)으로 감소 ○차량 통행량 감소(351대/시→206대/시, 41.5% 감소) ○불법 주정차 감소(46대→0대 , 100% 감소)
	충남	서산시	중앙 보행안전지구 보행환경 조성사업	'13.12.~ '16.01.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3.7건(사업전 3년 평균) → 1건 (사업후 1년)으로 감소 ○차량 속도 전 구간 감소 ○보행 만족도 증가(38.7점/100점→54.9점/100점, 16% 증가)
	경북	영천시	터미널 연계 보행환경 개선사업	'14.01.~ '16.12.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 1건(사업전 3년 평균) → 0건 (사업후 1년)으로 감소 ○가로교통량 3.46% 감소 ○유효보도폭 평균 1.28m 추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턱 낮추기, 점자 블럭 등) 확충

주) 첨두시간: 하루 중 차량의 도로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개별처분요구안 (4)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적용 검토 미비

소 관 기 관 경찰청

조 치 기 관 경찰청

내 용

1. 업무 개요

경찰청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22] 등에 따라 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좌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2014~2018년, 5년간)

(단위: 건,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간 평균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계	7,586	129	7,812	8,200	137	8,449	8,248	134	8,510	7,057	123	7,283	7,495	126	7,722	7,710	129	7,955
좌우회전	7,586	129	7,812	8,200	137	8,449	8,248	134	8,510	1,789	32	1,853	-	-	-	-	-	-
좌회전	-	-	-	-	-	-	-	-	-	3,295	54	3,425	4,647	84	4,805	-	-	-
우회전	-	-	-	-	-	-	-	-	-	1,973	37	2,005	2,848	42	2,917	-	-	-

주: 1. 2017년 중간부터 좌회전 우회전 분리 조사
2.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좌회전 사고에서 따로 분리하여 조사되지 않음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

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9조(위임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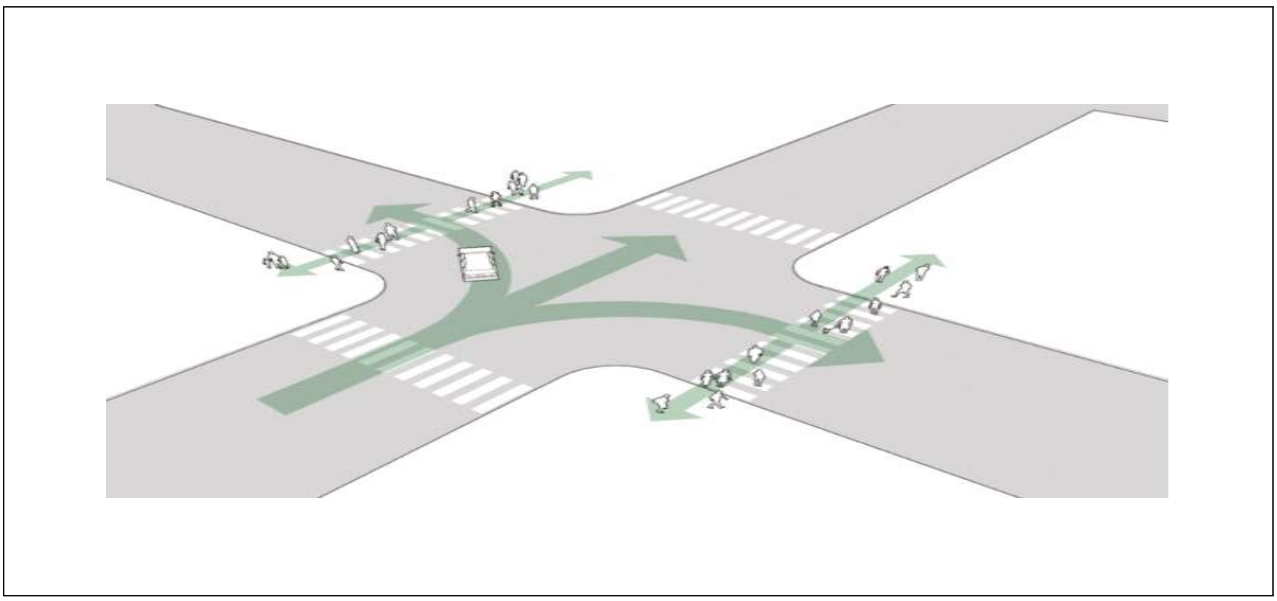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생하고 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경찰청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한 보행사고가 최근 5년간 연평균 7,710건(사망자 129명, 부상자 7,9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고는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외에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으로 인해서도 많이 발생한다. 즉 [그림 1]과 같이 신호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오른쪽 또는 왼쪽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도 녹색등이 등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23] 비보호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어 사고위험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우회전이 허용되고 있어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우려가 더 크다.[24]

[그림 1] 교차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 상황



23)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24) 「도로교통 신호체계 등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1968)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이 금지되나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을 허용함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을 개선하기 위해 전적색신호[25], 후행보행신호[26] 등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또는 보행자의 지체가 심해지는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의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호체계에 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위험과 관련하여 최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eading Pedestrian Interval, 이하 "LPI"라 한다)가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2]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개념도



좌·우회전 차량이 방향을 바꿀 때 보행자가 먼저 도로에 있게 됨으로써 운전자의 양보를 유도

자료: http://www.streetfilms.org/lpi-leading-pedestrian-interval/

25) 교차로 내 모든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등화되어 보행자는 대각선 횡단까지 가능함. 이때 차량신호는 모두 적색으로 차량의 교차로 진입이 금지됨
26) 차량 녹색신호 등화 몇 초 후에 보행신호가 등화되는 신호체계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LPI란 [그림 2]와 같이 신호교차로 내에서 차량신호보다 보행신호를 3~11초 우선 등화하여 비보호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 하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신호체계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뉴욕에서 2017년 11월 기준 전체 교차로 11,650개소 중 약 20%에 해당하는 약 2,381개 교차로에서 LPI를 운영중이며, 뉴욕 교통국(NYPD)이 2003~2011년 사이 LPI를 운영한 104개 교차로에 대해 운영 전·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중증부상자는 37% 감소하고 좌회전 차량에 의한 부상자 수는 14%, 사망·중증부상자는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 보행사고 감소 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LPI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27)]

한편 국내에서는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의 연구[28)] 결과 LPI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강화하고 보행통행권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LPI 국내 도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주대학교의 연구[29)]에서는 2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LPI를 시범운영 한 결과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와 신호 준수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협의회'에서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도 보행자 중심 신호운영 기법의 하나로 LPI 개

27)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2018년 6월 12개 교차로에서 LPI 운영을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총 80개 교차로에 도로이용자의 사망 및 중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고 감소를 목표로 확대·적용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교통 매뉴얼'(Ontario Traffic Manual Book 12)에 LPI는 회전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신호운영 방법으로 규정

28) '선행 보행신호 국내도입 타당성 분석'(2018. 12.)

29) '보행자우선 출발신호 교통신호체계 국내도입을 위한 적정시간 산출방안 연구'(2019. 2.)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념이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 중인 전적색신호나 후행보행신호 등 신호체계 외에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LPI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통해 LPI 적용이 적합한 위치와 조건 등을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경찰청은 우리나라에서 LPI의 실효성과 운영조건 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2019년 3월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찰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동의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9. 3. 26. 도로교통공단에 LPI 국내 도입 효과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였고, 앞으로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의 국내 도입·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개별처분요구안 (5)번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에 보행신호시간 연장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소 관 기 관 경찰청

조 치 기 관 경찰청

모 범 대상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경위 김래곤

모 범 내 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교통시설담당 김래곤은 2016. 1. 28.부터 2019. 3월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 등을 주관하면서 2018. 11. 1. '노인보호구역 및 노인사고다발지역 등에 대해 보행 신호시간 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표 1]과 같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수원시 등 21개 시·군[30])의 최근 3년간(2016~2018) 노인 보행사고는 2016년 219건, 2017년 224건, 2018년 246건(2016년 대비 12.3% 증가)으로 노인 보행사고 발생률은 증가 추세이며, 이 중 노인 사망자는 2016년 102명, 2017년 111명, 2018년 9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의 비중은 연평균 44.9%[31]에 이른다.

3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21개 시·군: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31)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도로교통공단, 2018년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6명으로 OECD 평균(8.8명)의 약 3배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의 42.2%인 1,767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실정임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표 1] 경기도 남부지역 노인 교통사고 현황(65세 이상, 2016~2018년)

(단위: 건, 명)

구분	전체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		사망 사고 유형			
	발생건수	사망자 수	발생건수	사망자 수	횡단 중			기타 (길가장자리 등)
					소계	횡단보도 내	횡단보도 외	
평균	38,703	227	229	102(44.9%)	63(61.7%)	25(24.5%)	38(37.2%)	39(38.3%)
2016년	38,365	245	219	102(41.6%)	67(65.5%)	26(25.4%)	41(40.1%)	35(34.5%)
2017년	37,780	240	224	111(46.2%)	68(61.2%)	26(23.4%)	42(37.8%)	43(38.8%)
2018년	39,966	197	246	93(47.2%)	55(59.3%)	24(25.9%)	31(33.4%)	38(40.7%)

자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위 사람은 20년 이상 교통시설담당 등 교통분야에서 근무한 교통안전시설 전문직위[32] 전문관으로 재직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령사회 도래 등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행 신호시간 관련 연구 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경찰청이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노인보호구역 이외에도 노인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경우는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이 없는 경우라도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보행속도 기준을 1.0에서 0.8m/sec로 완화, 20m 횡단보도의 경우 5초 연장)하는 것이 노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방안이라고 착안하였다.

그리하여 위 사람은 교통과 팀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시범운영으로 노인보호구역(27개소) 및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점(33개소) 등 총 60개소를 선정하여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추가로 부여(노인보호구역 0.8→0.6m/s 적용[33], 노인보행자

3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함

33) 2018년 8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와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노인 1,348명을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노인 보행속도 하위 4분의 1의 경우 보행속도는 0.663m/s이고 여자 노인 하위 4분의 1의 보행속도는 0.545m/s로 우리나라 노인의 보행속도가 국제 기준인 0.8m/s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위 사람은 이를 감안하여 0.6m/s를 적용함.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사고다발지점 1.0→0.8m/s 적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2018. 11. 1. 위 관서 교통과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1. 5.부터 다음 해 1. 4.(2개월 간)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31개 경찰서로 하여금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전국 최초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영통종합요양센터 및 매탄초교 앞 2개 지점 횡단보도에서 노인 횡단보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횡단시간 내 횡단보도 통과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효과분석을 하였으며 설문조사도 600명(노인 300명, 일반인 180명, 사업용 차량 운전자 120)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여 보행시간 추가 부여 전·후의 체감안전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2018.11.5.~2019.1.4., 2개월)

■ (**시범운영 개요**)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 총 60개소에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 적용하면서, 직접 노인보행자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실시

■ (**노인보행자 모니터링 결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영통종합요양센터와 매탄초교 앞 2개 지점 횡단보도에서 노인보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모니터링

- 횡단보도 잔류 총원이 95명에서 34명으로 64.2% 감소
- 교통사고 발생은 3건에서 1건으로 감소, 사망사고는 작년과 동일하게 미발생(전년 동일 기간 대비)

■ (**설문조사 결과**) 600명(노인 300, 일반인 180, 운전자 120)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행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7.7%(특히 노인은 72%)로 체감안전도가 향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안전에 도움) 전체 600명 중 346명(57.7%) / 노인 300명 중 216명(72%)

그 후 위 사람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표 2]과 같이 1단계 개선 대상지점으로 2016~2018년 '횡단보도 내 노인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를 선정하고, 2단계로 노인이용시설 등 노인 통행량이 많은 지점의 횡단보도 243개소(노인여가시설 142, 노인주거시설 89,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12개소)를 추가 조사하여 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행속도 기준을 1m/s에서 0.8m/s로 낮추는 계획을 직접 수립한 다음 2019. 2. 12. 위 관서 교통과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2. 13.부터 3. 15.(5주간)까지 개선하도록 시달한 후 해당 기간 중에 관내 31개 경찰서 담당자와 함께 1단계 689개소, 2단계 243개소의 실태를 조사하여 신호시간 조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보행신호등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1단계 591개소, 2단계 94개소의 보행시간을 연장하였고, 2단계 기간 중 [사진]과 같이 노인 배려,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홍보를 위해 지역 어르신의 사연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배포[34]하였다.

[사진] 노인 배려,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홍보 동영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제작·배포한 홍보 동영상(2019년 3월, 2단계 기간 중 제작)

자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람은 3단계로 전통시장·공원 등 실질적으로 노인 통행이 많은 시설 주변 횡단보도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행속도를 1m/s에서 0.8m/s로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 3. 21. 위 관서 교통과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3. 21.부터 4. 5.(2주간)까지 위 계획 내용대로 개선하도록 시달하여 211개소의 보행신호시간이 연장되도록 하였고, 보행시간 연장의 추진 동력 확보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31개 경찰서와 수시로 노인 사망사고 예방 등을 위한 컨설

3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홍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은 업체에 맡겨 제작(제작비용 33만 원)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표 2] 단계별 추진기간 및 대상(2018. 11. 5.~ 2019. 4. 5., 5개월간)

구분	기간	대상
시범운영	2018. 11. 5.~2019. 1. 4. (2개월간)	·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점 33개소 및 노인보호구역 27개소 총 60개소 중 33개소의 보행신호 연장 · 시범기간 동안 모니터링(1,000명 대상)과 설문 조사(600명 대상) 수행
1단계	2019. 2. 13.~2. 28. (16일간)	· 2016~2018년 '횡단보도 내' 노인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 중 591개소의 보행신호 연장 ※ 시범운영 장소 33개소의 보행신호를 연장 운영 중
2단계	2019. 3. 4.~3. 15. (2주간)	· 노인 이용시설 등 노인 통행량 많은 곳 인접 횡단보도 243개소 중 94개소 연장 (243개소: 노인여가시설 142개소, 노인주거시설 89개소,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12개소) ※ 홍보 동영상 제작: 노인 배려,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홍보를 위해 지역 어르신의 사연을 담은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3단계	2019. 3. 21.~4. 5. (2주간)	· 전통시장·공원 등 실질적으로 노인 통행이 많은 211개 지역 주변 횡단보도에도 보행시간 연장

주: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은 반경 200m 이내에서 인명피해가 연간 3건 이상(사망포함시 2건) 발생된 경우 지정됨
자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년에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노인의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개선할 예정이며, 전국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을 재검토하여 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및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노인 이용시설 등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주변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위 사람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등의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하여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개별처분요구안 (6)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연 지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교육부 ②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① 교육부 ②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육부 등과 공동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보호구역 지정·관리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한 후 시장 등[35]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호구역 지정·관리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개교 전에는 교육감이, 개교 후에는 초등학교의 장이 시장 등에게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 등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2014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개교한 212개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 3월 현재 208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미지정 4개 초등학교도 2019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될

3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예정이므로 최근 개교되는 초등학교 주변은 모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개교 후에 하거나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개교 후로 장기간 미룬다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만큼 노출되므로 교육부는 교육감 등이 개교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행정안전부는 시장 등이 초등학교 개교 전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8.~4. 5.) 중 2014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개교한 전국 21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교 전·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212개 중 147개(69.3%, 미지정 4개 포함) 초등학교가 개교 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 147개(미지정 4개 포함) 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한 시기를 보면 [표 2]와 같이 101개(68.7%) 초등학교가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개교 직전 또는 개교 후에 지정 신청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개교 이후로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 개교 전·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개)

지정시점	개교이전 (개교당일포함)	개교 후								합계
		1개월 내	1~6개월	6~12개월	1~2년	2~3년	3년 이상	미지정	소계	
지정수	65	35	65	21	11	4	7	4	147	**212**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표 2] 교육청(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현황

(단위: 개)

신청시점	개교 전				개교 후						미신청	합계
	3개월 이상	1~3개월	1개월 내 (10일 내)	소계	1개월 내	1~6개월	6~12개월	1~2년	3년 이상	소계		
신청수	8	38	**34(12)**	**80**	14	11	6	1	2	34	**33**	**147**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147개 학교 중 114개(미신청 33개 제외)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시장 등이 처리한 기간을 보면 [표 3]과 같이 72개(63.2%) 초등학교에서 2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표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후 지정 처리현황

(단위: 개)

처리시점	1개월 내	1~2개월	2~3개월	3~6개월	6~12개월	1~2년	미지정[36]	합계
처리학교 수	14	28	20	26	14	8	4	**114**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33개 초등학교에 대해 시장 등이 직권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처리한 기간을 보면 [표 4]와 같이 33개 초등학교 중 25개(75.8%) 초등학교에서 개교 후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표 4] 개교 후 직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처리한 현황

처리시점	1개월 내	1~2개월	2~3개월	3~6개월	6~12개월	1~2년	2년 이상	합계
처리수	7	1	3	8	4	2	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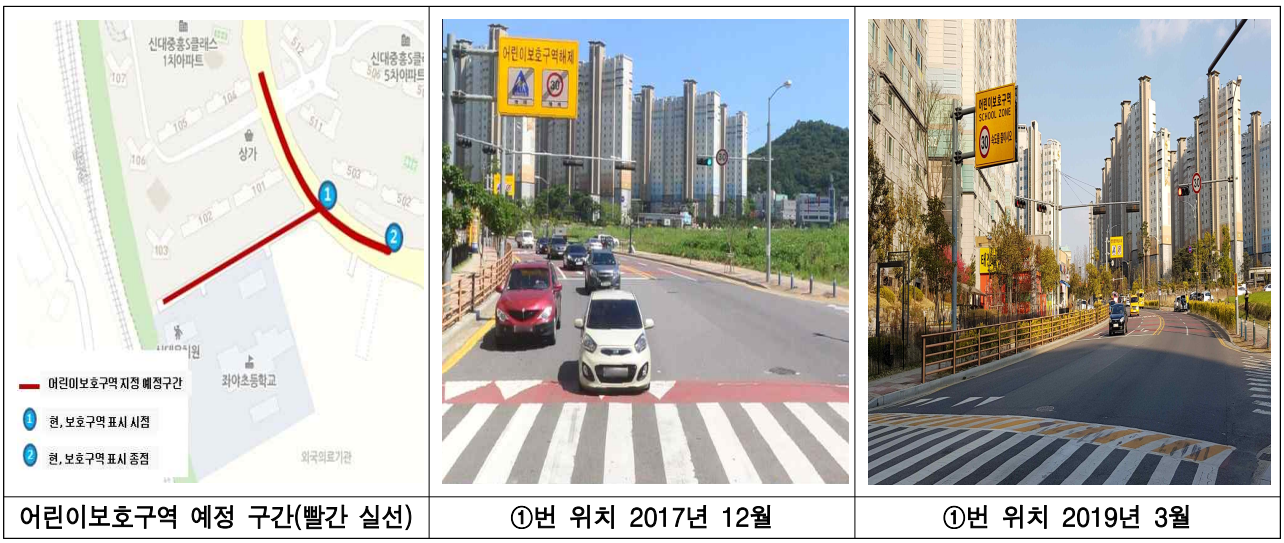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6) 미지정 4개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후 2019. 3. 22. 현재 최소 5개월에서 최대 4년 경과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한편, 순천시에서는 2015. 3. 1. 개교한 ㅅ초등학교[37]의 경우 2015. 3. 6. 해당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지만 관리 누락으로 4년이 지난 2019년 3월 현재까지도 ㅅ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아 [사진 1]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예정구간 중 일부 ①~②구간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 시공사가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38]이 있을 뿐이었다.

[사진 1] 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예정 구간(빨간 실선)	①번 위치 2017년 12월	①번 위치 2019년 3월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짐으로써 초등학교에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장기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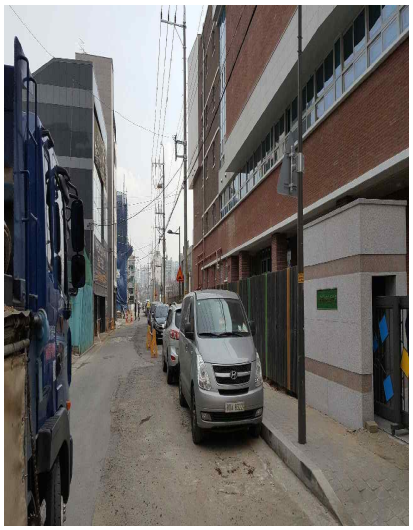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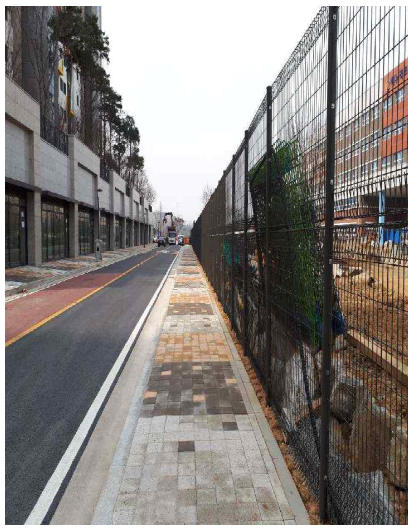
3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소재

38) ①번 위치에 설치한 표지판도 2017. 12. 20.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공사 시까지는 보호구역 해제표시로 되어 있어 개교 후 2년 10개월 동안 잘못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39) 서울특별시(송파구)에서는 2019. 3. 4. 개교한 해누리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사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진 2]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아 2019년 4월 현재 ㅇ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도 없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ㅇ초등학교에서 2019. 3. 18. 서울특별시(송파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2019년 4월 현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임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사진 2] ㅇ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현황

		
ㅇ초등학교 정문	ㅇ초등학교 측면	ㅇ초등학교 후문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교육감이 초등학교 개교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시장 등이 초등학교 개교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등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개교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개교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개별처분요구안 (7)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초등학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검토 미흡**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경찰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도로교통법」제12조를 신설(1995. 7. 1.)하고, 행정안전부는 2011. 1. 21.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한 후 시장 등[40]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등[41]이 있는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지정대상시설 초등학교 등의 장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42]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

40)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
41)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2011년부터 지정 대상에 포함, 100인 이상 규모),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42) 2016. 5. 2.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를 개정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직접 지정한 사례는 없음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동차 통행량, 주차 소요,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발생 현황, 어린이 통행자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이하 “도로운영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찰청은 도로의 횡단보도에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0.8m/sec)를 기준으로 설정한 신호기와 교통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등은 보호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운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등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을 운용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등의 장(초등학원장 포함)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사고 조사·분석자료를 토대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의 도로운영 실태조사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8.~4. 5.) 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인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시장 등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학원 주변 도로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있어 아래 [표 2]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100인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이상 규모의 초등학원 817개 중 3개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0.3%)되는 등 8개 특별·광역시[43]에서 총 3,624개의 지정대상 초등학원(100명 이상) 중 20개(0.5%)만 지정된 실정이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초등학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2019년 3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지정대상 초등학원 수	817	101	317	1,106	192	638	304	149	3,624
지정학원 수 (지정률)	3 (0.3)	3 (2.9)	1 (0.3)	13 (1.0)	0 (0)	0 (0)	0 (0)	0 (0)	20 (0.5)

자료 : 교육부 및 도로교통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8개 특별·광역시 소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44] 240개소[45]에 대하여 초등학원(100명 이상 규모)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비교·분석한 결과, [별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 소재 초등학원 현황(2013~2017년, 5년간)”과 같이 105개소(43.75%)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학원이 323개 있는데도 학원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인지 모르거나 시장 등이 직권으로 도로운영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2019년 3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초등학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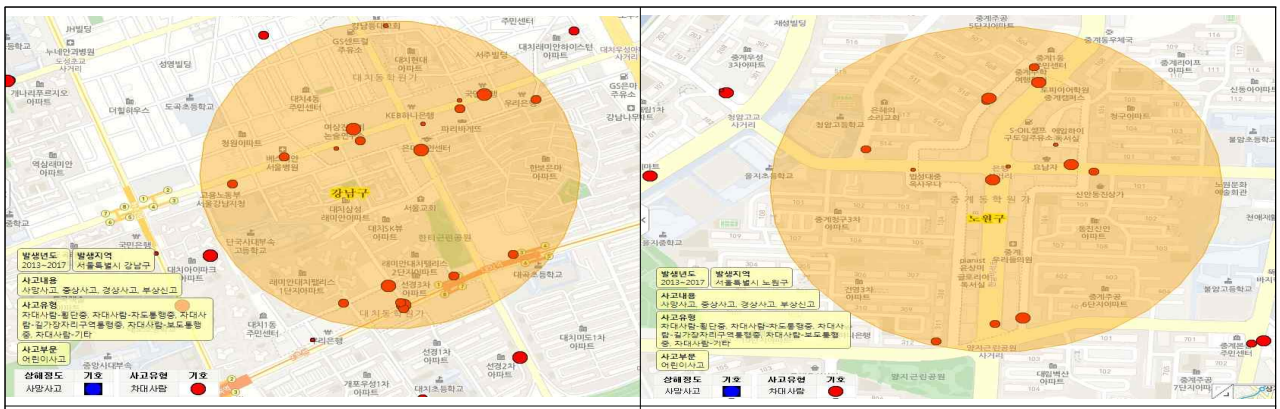
특히 이 중 [그림]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46]의 경우는 2014년에 어린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점으로서 5년간 17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동학원가[47]의

43) 8개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44) 어린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은 200m 이내에 12세 이하 보행 어린이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사망사고 포함시 2건 이상)을 선정함
45) 240개소(서울 94, 부산 28, 대구 35, 인천 14, 광주 31, 대전 26, 울산 11, 세종 1)
46) 대치동학원가에 ㅇ(1,500명 규모) 등 100명 이상 규모의 초등학원 6개 확인(2019년 3월 기준)
47) 중계동학원가에 ㅂ(700명 규모) 등 100명 이상 규모의 초등학원 7개 확인(2019년 3월 기준)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경우도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점으로 5년간 1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으며, 두 지점 모두 사고발생 일시가 평일 15~22시 사이에 집중[48]되어 학원 등·하원 시 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대치동 및 중계동 학원밀집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13~2017년, 5년간)



대치동 학원가(부상자 17명 발생, 반경 500m)	중계동 학원가(부상자 13명 발생, 반경 300m)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출자료

한편 서울특별시에서 작성한 “보행정책과 업무현황”(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19년 2월) 문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가능 대상 초등학원(100명 이상)을 2018년 12월 말 기준 734개로 조사하고서도 학원 입지 위치가 주로 간선 도로변에 있다는 사유 등으로 학원을 필수 지정 대상에서 제외[49]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3개[50] 학원(0.4%)만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원의 도로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48) 대치동학원가는 17명 중 11명(64.7%), 중계동학원가는 13명 중 11명(84.6%)의 교통사고가 평일 15~22시에 발생함

49)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외국인학교는 필수 지정대상으로 관리하나, 학원은 통학패턴(주로 저녁에 운영), 입지 위치(주로 간선도로변), 보호구역 운영 시간(8~20시)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정함

50)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3개 학원(양천구 2개, 강동구 1개) 주변은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원 운영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원 주변 도로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 소재 초등학원 현황(2013~2017년, 5년간)

(단위: 명, 건)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	서울	강남구2 (2014)	-	340	3		3		o			
			-	459	3		3		o			
			-	459	3		3		o			
2	서울	강동구1 (2014)	-	150	3		3		o			
3	서울	강동구1 (2015)	-	200	3		3			o		
4	서울	강북구2 (2016)	-	120	3		3				o	
			-	128	3		3				o	
			-	135	3		3				o	
5	서울	강북구3 (2013)	-	200	3		3	o				
			-	260	3		3	o				
6	서울	강서구1 (2013)	-	168	4		4	o				
			-	750	4		4	o				
			-	360	4		4	o				
7	서울	강서구1 (2015)	-	128	3		3			o		
			-	240	3		3			o		
			-	192	3		3			o		
			-	151	3		3			o		
8	서울	강서구1 (2016)	-	285	3		3				o	
			-	120	3		3				o	
			-	110	3		3				o	
9	서울	강서구2 (2013)	-	199	3		3	o				
10	서울	강서구2 (2014)	-	240	3		3		o			
			-	140	3		3		o			
			-	120	3		3		o			
			-	100	3		3		o			
			-	160	3		3		o			
			-	288	3		3		o			
11	서울	관악구1 (2015)	-	2,850	3		3			o		
			-	465	3		3			o		
			-	504	3		3			o		
			-	355	3		3			o		
			-	240	3		3			o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2	서울	광진구 1(2013)	-	100	3		3	o				
13	서울	금천구1 (2015)	-	144	3		3			o		
14	서울	도봉구1 (2014)	-	144	4		4		o			
15	서울	도봉구2 (2013)	-	240	3		3	o				
16	서울	동대문구1 (2013)	-	250	4		5	o				
17	서울	동대문구1 (2014)	-	108	3		3		o			
			-	140	3		3		o			
18	서울	동대문구2 (2014)	-	160	3		3		o			
			-	300	3		3		o			
19	서울	노원구1 (2014) 노원구2 (2016)	-	120	7		7		o		o	
			-	100	7		7		o		o	
			-	812	7		7		o		o	
			-	100	7		7		o		o	
			-	266	7		7		o		o	
			-	105	7		7		o		o	
			-	108	7		7		o		o	
			-	100	7		7		o		o	
			-	108	7		7		o		o	
			-	100	7		7		o		o	
			-	169	7		7		o		o	
			-	169	7		7		o		o	
20	서울	동작구1 (2014)	-	237	5		6		o			
			-	770	5		6		o			
			-	630	5		6		o			
			-	316	5		6		o			
			-	305	5		6		o			
21	서울	동작구1 (2015) 동작구3 (2016)	-	140	6		6			o	o	
22	서울	동작구1 (2016)	-	73	5		6				o	
			-	160	5		6				o	
			-	276	5		6				o	
23	서울	동작구2 (2016)	-	501	3		3				o	
			-	396	3		3				o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142	3		3				o	
			-	120	3		3				o	
			-	146	3		3				o	
24	서울	서대문구1 (2017)	-	180	3		3					o
25	서울	성북구1 (2016)	-	105	3		3				o	
			-	112	3		3				o	
			-	142	3		3				o	
			-	162	3		3				o	
26	서울	성북구2 (2013)	-	107	3		3	o				
			-	112	3		3	o				
			-	240	3		3	o				
27	서울	송파구1 (2014)	-	150	4		4		o			
28	서울	송파구1 (2017)	-	140	4		4					o
29	서울	송파구2 (2014)	-	660	3		3		o			
			-	120	3		3		o			
			-	190	3		3		o			
30	서울	양천구1 (2013)	-	300	5		5	o				
31	서울	양천구1 (2013) 강서구1 (2014)	-	200	11		11	o	o			
32	서울	양천구1 (2017)	-	192	3		3					o
33	서울	양천구2 (2014)	-	128	3		3		o			
34	서울	용산구 1(2015)	-	180	3		3			o		
35	서울	은평구1 (2013)	-	108	4		4	o				
36	서울	은평구 1(2014) 은평구2 (2013)	-	571	11		11	o	o			
			-	150	11		11	o	o			
37	서울	은평구1 (2015)	-	204	3		3			o		
38	서울	은평구2 (2015)	-	100	3		3			o		
39	서울	중구1 (2013)	-	144	5		5	o				
			-	436	5		5	o				
			-	228	5		5	o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40	서울	중구 2(2013)	-	115	4		4	o				
41	서울	중랑구1 (2013)	-	230	4		4	o				
			-	141	4		4	o				
42	서울	중랑구1 (2014)	-	312	4		4		o			
43	부산	기장군1 (2014)	-	151	3		3		o			
44	부산	동래구1 (2013)	-	230	3		3	o				
45	부산	사하구1 (2013)	-	200	4		4	o				
			-	210	4		4	o				
			-	220	4		4	o				
			-	330	4		4	o				
46	부산	사하구1 (2013) 사하구2 (2014)	-	120	7		7	o	o			
47	부산	사하구1 (2016)	-	245	4		4				o	
			-	100	4		4				o	
48	부산	해운대구1 (2015)	-	220	3		3			o		
			-	100	3		3			o		
			-	130	3		3			o		
49	대구	달서구1 (2013) 달서구1 (2015)	-	140	7		7	o		o		
50	대구	달서구1 (2013) 달서구1 (2016) 달서구2 (2014)	-	264	12		13	o	o		o	
51	대구	달서구1 (2015)	-	112	3		3			o		
52	대구	달서구2 (2013)	-	102	3		3	o				
			-	100	3		3	o				
53	대구	달서구2(20 15)	-	700	3		3			o		
54	대구	달서구2 (2016)	-	200	3		4				o	
			-	120	3		4				o	
			-	250	3		4				o	
55	대구	달서구4 (2014)	-	120	3		3					
56	대구	북구2 (2014)	-	100	6		6		o			o
			-	1830	6		6		o			o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북구2 (2017)	-	100	6		6		o			o
			-	150	6		6		o			o
			-	200	6		6		o			o
			-	500	6		6		o			o
			-	210	6		6		o			o
57	대구	북구2 (2015)	-	100	3		3			o		
58	대구	서구1 (2013)	-	105	3		3	o				
59	대구	서구1 (2013) 서구1 (2014)	-	1120	7		7	o	o			
60	대구	서구1 (2015) 서구2 (2017)	-	236	6		6			o		o
61	대구	수성구1 (2013)	-	304	3		3	o				
62	대구	수성구1 (2017)	-	300	3	1	2					o
63	대구	수성구2(2017)	-	160	3		3					o
			-	480	3		3					o
			-	360	3		3					o
64	대구	수성구4 (2017)	-	480	3		4					o
			-	180	3		4					o
65	인천	계양구1 (2015)	-	122	5		5			o		
			-	202	5		5			o		
			-	154	5		5			o		
			-	622	5		5			o		
			-	184	5		5			o		
			-	180	5		5			o		
			-	376	5		5			o		
66	인천	계양구2 (2015)	-	180	3		3			o		
67	인천	남구1 (2014)	-	186	3		3		o			
			-	144	3		3		o		o	
			-	196	3		3		o		o	
68	인천	남구1 (2016)	-	248	4		4				o	
			-	144	4		4				o	
			-	180	4		4				o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69	인천	남동구1 (2017)	-	777	3		3					o
			-	150	3		3					o
70	인천	서구1 (2013)	-	192	3		3	o				
			-	233	3		3	o				
			-	108	3		3	o				
71	인천	서구1 (2015)	-	121	4		4			o		
			-	221	4		4			o		
			-	206	4		4			o		
			-	150	4		4			o		
			-	128	4		4			o		
			-	153	4		4			o		
			-	100	4		4			o		
			-	127	4		4			o		
72	인천	서구2 (2015)	-	122	3		3			o		
73	인천	서구3 (2015)	-	200	3		3			o		
			-	195	3		3			o		
			-	211	3		3			o		
			-	100	3		3			o		
74	인천	광산구1 (2016)	-	1200	5		5				o	
			-	990	5		5				o	
75	인천	광산구3 (2013)	-	600	3		3	o				
76	인천	북구1 (2013)	-	300	3		3	o				
			-	1,500	3		3	o				
			-	300	3		3	o				
			-	6,900	3		3	o				
			-	600	3		3	o				
			-	300	3		3	o				
			-	600	3		3	o				
			-	320	3		3	o				
			-	320	3		3	o				
			-	700	3		3	o				
			-	1865	3		3	o				
			-	800	3		3	o				
			-	1680	3		3	o				
77	인천	북구1	-	300	3		4			o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015)	-	360	3		4			o		
			-	1600	3		4			o		
78	인천	북구2 (2016)	-	7700	3		3				o	
79	인천	북구2 (2016) 북구2 (2017)	-	600	6		6				o	o
			-	7700	6		6				o	o
			-	1160	6		6				o	o
80	인천	북구2 (2017)	-	360	3		3					o
81	인천	북구3 (2016)	-	600	3		3				o	
			-	1200	3		3				o	
			-	1320	3		3				o	
			-	980	3		3				o	
82	인천	서구1 (2013)	-	6900	3		3	o				
83	인천	서구1 (2014)	-	600	4		4		o			
			-	300	4		4		o			
			-	3200	4		4		o			
84	대전	서구1 (2016)	-	100	4		4				o	
85	대전	서구1 (2015)	-	240	4		4			o		
86	대전	서구1 (2016)	-	676	4		4				o	
87	대전	서구1 (2017)	-	150	3	1	3					o
88	대전	서구2 (2015)	-	110	4		4			o		
			-	110	4		4			o		
89	대전	서구3 (2016) 서구1 (2017)	-	120	7	1	6				o	o
			-	360	7	1	6				o	o
			-	120	7	1	6				o	o
			-	586	7	1	6				o	o
90	대전	서구3 (2017)	-	120	3		3					o
			-	150	3		3					o
			-	1080	3		3					o
91	대전	유성구1 (2016)	-	130	3		3				o	
			-	549	3		3				o	
92	대전	유성구1 (2017)	-	120	3		3					o
93	대전	중구1 (2016)	-	205	3		3				o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94	울산	남구1 (2013)	-	104	3		3	o				
95	울산	남구1 (2016)	-	330	4		4				o	
			-	252	4		4				o	
			-	360	4		4				o	
			-	108	4		4				o	
96	울산	남구2 (2016)	-	232	3		3				o	
			-	120	3		3				o	
			-	104	3		3				o	
97	울산	동구1 (2015)	-	100	3		3			o		
98	대전	서구4 (2015)	-	95	3		4			o		
			-	161	3		4			o		
			-	120	3		4			o		
			-	155	3		4			o		
			-	310	3		4			o		
			-	520	3		4			o		
			-	320	3		4			o		
			-	220	3		4			o		
			-	250	3		4			o		
			-	646	3		4			o		
			-	408	3		4			o		
			-	150	3		4			o		
			-	137	3		4			o		
			-	221	3		4			o		
			-	180	3		4			o		
			-	350	3		4			o		
			-	156	3		4			o		
			-	150	3		4			o		
			-	144	3		4			o		
			-	140	3		4			o		
			-	662	3		4			o		
			-	291	3		4			o		
			-	170	3		4			o		
			-	128	3		4			o		
			-	400	3		4			o		
			-	540	3		4			o		
			-	500	3		4			o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960	3		4			o		
			-	307	3		4			o		
			-	255	3		4			o		
			-	588	3		4			o		
			-	100	3		4			o		
			-	374	3		4			o		
			-	192	3		4			o		
			-	110	3		4			o		
			-	60	3		4			o		
			-	850	3		4			o		
			-	455	3		4			o		
			-	150	3		4			o		
			-	522	3		4			o		
			-	270	3		4			o		
			-	208	3		4			o		
			-	456	3		4			o		
			-	960	3		4			o		
			-	276	3		4			o		
			-	100	3		4			o		
			-	241	3		4			o		
			-	190	3		4			o		
			-	420	3		4			o		
			-	300	3		4			o		
			-	230	3		4			o		
			-	306	3		4			o		
99	울산	북구1 (2013)	-	72	3		3	o				
			-	135	3		3	o				
			-	142	3		3	o				
			-	210	3		3	o				
			-	184	3		3	o				
			-	108	3		3	o				
100	울산	북구1 (2015)	-	140	3		3			o		
101	울산	울주군1 (2014)	-	100	4		4		o			
			-	154	4		4		o			
			-	102	4		4		o			

연번	시·도명	다발지명 (사고연도)	학원명	정원	사고	사망	부상	사고발생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192	4		4		o			
			-	106	4		4		o			
			-	146	4		4		o			
102	울산	울주군1 (2015)	-	310	3		3			o		
			-	154	3		3			o		
			-	132	3		3			o		
			-	100	3		3			o		
			-	126	3		3			o		
103	울산	중구1 (2015)	-	120	3		3			o		
104	울산	중구1 (2016)	-	105	3		3					
105	세종	세종1 (2017)	-	100	5		5					o
			-	100	5		5					o
			-	105	5		5					o
			-	112	5		5					o
			-	114	5		5					o
			-	117	5		5					o
			-	117	5		5					o
			-	118	5		5					o
			-	124	5		5					o
			-	127	5		5					o
			-	150	5		5					o
			-	156	5		5					o
			-	158	5		5					o
			-	195	5		5					o
			-	200	5		5					o
			-	227	5		5					o
			-	240	5		5					o
			-	295	5		5					o
			-	328	5		5					o
			-	447	5		5					o
			-	470	5		5					o
			-	480	5		5					o
			-	480	5		5					o
			-	660	5		5					o

주: 최근 5년간 보행어린이 사고다발지 내 포함된 100인 이상 규모의 초등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교육부 및 도로교통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개별처분요구안 (8)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운용방법 부적정**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시장 등[51]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 지원 및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5개년 계획(2018~2022년) 수립지침"(2018. 5. 21.) 통보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52]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7. 8. 25.부터 매년 범죄예방(방범용) 및 재난대응 CCTV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운영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설치사업 추진지침"(이하 "CCTV 설치지침"이라 한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있다.

---

5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

52)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로 범죄예방 CCTV가 설치되어 왔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를 증가하는 추세임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행정안전부는 CCTV 설치지침에서 안양시가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 CCTV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번 감사 시 안양시에 확인한 결과 안양시에서는 [표 1]과 같이 2017~2018년 사이 13개소에서 기존 범죄예방 CCTV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추가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CCTV 설치비의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주정차단속이 가능하게 범죄예방 CCTV를 공동활용하고 있다.

[표 1] 안양시 범죄예방 및 주정차단속 CCTV 개별설치와 공동활용 사례

(단위: 천 원)

구분	'18년 개별설치		'17~'18년 공동활용(15개소)	
	범죄예방 CCTV	주정차단속 CCTV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13개소)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 및 카메라교체 등(2개소)
소요 비용	24,718	29,177	2,700	11,165

자료: 안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안양시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존 범죄예방 CCTV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에 공동활용하도록 관련 매뉴얼 배포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도하여 공동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CCTV 설치지침에서 안양시의 사례를 소개하였을 뿐 기존의 범죄예방 CCTV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에 공동활용하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안양시처럼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추가 설치하여 카메라 공유를 통한 공동활용으로 이해하고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53]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8.~4. 5.) 중 경기도 등 14개[54]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 범죄예방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예정 인근에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한 107개소를 보면, 천안시에서는 ㅁ초등학교 정문 주변 도로[55]에 2010년 7월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한 후 2017년 6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기존 범죄예방 CCTV 폴대에 암대를 붙여 주정차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56] [표 2] 및 [별표] "범죄예방 및 주정차단속 CCTV 공동활용과 개별설치 사례"와 같이 폴대 1개에 범죄예방 CCTV와 주정차단속 CCTV를 각각 설치한 곳이 27개소이며, 폴대까지 완전히 따로 설치한 곳이 60개소나 되었고, 범죄예방 카메라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설치한 경우는 20개소(18.7%)에 불과하였다.

[표 2] '16~'18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CCTV 설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개 폴대 개별	18	17	25	60
1개 폴대 개별	3	3	21	27
카메라 공유	3	2	15	20
합계	24	22	61	107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적은 비용으로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카메라를 공유

53) 남원시의 경우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한 후 범죄예방 CCTV로 겸용하는 것으로 공동 활용의 의미를 잘 못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설치·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2017년부터 주정차단속 CCTV 폴대와 범죄예방 CCTV 폴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담당자가 하나의 폴대에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 CCTV를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공동활용으로 알고 있음

54)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울산, 세종시는 해당 기간에 범죄예방 CCTV 인근에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없음

5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46 소재

56) 천안시의 경우 범죄예방 CCTV와 주정차단속 CCTV는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운영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함으로써 설치 및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CCTV 설치지침을 보완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범죄예방 CCTV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주정차단속에 공동활용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배포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범죄예방 및 주정차단속 CCTV 공동활용과 개별설치 사례

▪ (공동활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ㅅ 유치원



인천 서구 ㄳ초등학교

▪ (1개 폴대 개별설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ㅁ초등학교



경상남도 의령군 ?초등학교

▪ (2개 폴대 개별설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ϕ초등학교



서울 서초구 ㅗ초등학교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개별처분요구안 (9)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부속시설물[57]인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9호, 2009. 11. 11. 제정, 이하 “안전시설지침”이라 한다) 등을 제정하고, 각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지침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하게 하는 등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도, 시·도 등의 도로관리청[58]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59]

---

57)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58)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그 밖의 도로(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는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59)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시·도는 제외함), 군도·구도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한편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포장면이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 선형이 불량한 구간, 또는 보호구역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표 1]과 같이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임으로써 자동차가 급정지할 때 제동거리를 짧게 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60]하는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표 1] 미끄럼방지포장 형식에 따른 종류

구분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개념	· 기존 포장에 마찰력이 높은 재료를 부착, 포장, 첨가하여 도로 포장면의 미끄럼 마찰저항을 향상	· 기존 포장면의 절단 또는 절삭 등을 통해 포장면을 거칠게 하여 도로포장면의 미끄럼 마찰저항을 향상
종류	· **수지계 표면처리** · 개립도 마찰층[1] · 슬러리실[2]	· 그루빙[3] · 숏 블라스팅[4] · 노면절삭[5]

주: 1. 투수성과 마찰계수가 큰 골재를 포장재로 사용하여 마찰력을 증대
2. 기존 포장층 위에 아스팔트와 잔골재, 석분 등을 혼합·도포하여 포장면의 마찰력 증대
3. 포장면에 횡 또는 종방향으로 홈을 내 우천 시 수막현상을 제거하여 포장면의 마찰 저항을 개선
4. 쇠구슬을 이용하여 포장면을 두드려 거칠게 만들어 포장면의 마찰력 증대
5. 포장면을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깎아내는 방법으로 포장면의 마찰력 증대

자료: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재구성

이 중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이란 [그림 1]과 같이 에폭시 수지[61]를 포장면에 고르게 도포한 후 마찰계수가 큰 경질 골재를 살포 및 고착화하여 도로의 미끄럼 저항성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끄럼방지포장 방법이다.

60) 도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은 도로교통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우천으로 인해 포장면이 젖어 있을 때의 미끄럼 문제는 매우 심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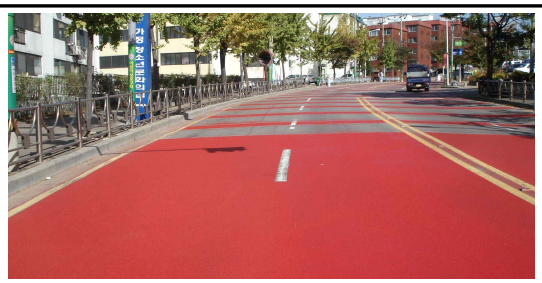
61) 접착성이 강한 신소재로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시 포장면과 골재 간의 접착제 역할을 함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그림 1]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도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단면도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후 모습

자료: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재구성

그리고 안전시설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 3. 설치장소 기준에 따르면 공용 중인 기존 도로 중 도시지역에서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나 이와 비슷한 위험 구간의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의 포장면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마찰계수를 SN[62]37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2.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 마찰계수 설치기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안전시설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 6. 시공 기준 등에 따르면 미끄럼방지포장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경우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조기에 골재가 이탈하거나 에폭시 수지(접착제) 자체가 노면에서 떨어져 나와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시공 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은 [그림 2]와 같이 설치 후 교통 개방 및 시간 경과에 따라 차량의 하중 등에 의해 포장 표면에 부착된 골재 등이 마모 또는 이탈되어 미끄럼 마찰계수가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

62) Skid Number의 약자로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에 따라 자동식 미끄럼 저항 측정기(PFT-Pavement Friction Tester)를 활용하여 우천 상황에서 자동차가 급정지할 때 자동차 타이어와 포장 접지면 간의 마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값(0~100 사이)이 클수록 마찰력이 큼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그림 2]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적정 미끄럼마찰계수 확보(골재 부착 양호)



적정 미끄럼마찰계수 미확보(골재 이탈)

자료: 현장 점검 결과 재구성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각 도로관리청이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을 시공할 때 포장면이 적정 품질(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시공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포장면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구간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일정 기간[63] 이상 도로 포장면의 최소 관리 마찰계수인 SN 3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안전시설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 6.시공 기준에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 마찰계수 최소 기준"을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미끄럼방지포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시공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8.~4. 5.) 동안 교통안전지수[64]가 낮은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확인 실태를 조사

6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품질보증기한)을 24개월로 규정

64)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로서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한 결과 49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 기준이 지침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하지 않고 관례대로 육안으로 점검[65]하여 준공처리 하였으며, 이 가운데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설치한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66] 구간 65개소의 미끄럼마찰계수를 측정[67]·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35.38%에 해당하는 23개소가 공용중인 도로 포장면의 미끄럼 마찰계수 최소 기준인 SN 37에 미달하여 미끄럼 저항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구간 미끄럼 마찰계수 측정 결과

(단위: 개소, %)

연번	시·도	시·군·구	미끄럼 마찰계수 측정결과					
			최소기준(SN 37) 이상		**최소기준(SN 37) 미만**		계	
			개소 수	비율	**개소 수**	**비율**	개소 수	비율
1	경기도	고양시	6	66.67	**3**	**33.33**	9	100.00
2		수원시	2	50.00	**2**	**50.00**	4	100.00
3		용인시	5	100.00	**-**	**-**	5	100.00
4		화성시	3	50.00	**3**	**50.00**	6	100.00
5		평택시	-	-	**6**	**100.00**	6	100.00
6	경상북도	포항시	1	100.00	**-**	**-**	1	100.00
7	대구광역시	북구	3	75.00	**1**	**25.00**	4	100.00
8		수성구	1	100.00	**-**	**-**	1	100.00
9	전라북도	전주시	3	75.00	**1**	**25.00**	4	100.00
10	충청북도	청주시	18	72.00	**7**	**28.00**	25	100.00
계			42	64.62	**23**	**35.38**	65	100.00

자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측정결과 재구성

그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저항성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3.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유지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65) 준공 검사를 하면서 측정 기준 없이 설치 위치 확인 등 사진 및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해 준공처리

66) 모두 하자담보책임기간(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통행 제한속도를 30㎞/hr 이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제한속도 이상 과속이 가능하여 급정지 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2차로 이상의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구간을 대상으로 선정함

67) 감사기간 내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자동식 미끄럼 저항 측정기(PFT)를 활용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물을 분사 노즐을 통해 포장면에 뿌리면서 동시에 측정 차량의 타이어에 급제동을 걸어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을 측정함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안전시설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 7. 유지관리 등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이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경우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끄럼방지포장이 항상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를 안전시설지침에서 정한 최소 마찰계수인 SN 37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에 맞게 기존 아스팔트 포장면의 마찰계수보다는 높은 값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68]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120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204개소를 표본[69]으로 하여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70]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9개소 중 6개소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공용 중 도로 포장면의 미끄럼 마찰계수 최소 기준인 SN 37에 미달하는 등 [표 3]과 같이 총 204개소의 46.08%에 해당하는 94개소가 포장면이 갖춰야 할 최소 미끄럼 저항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도로관리청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포장면을 제때 유지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

68) 안전시설지침에 따르면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포장면의 미끄럼 마찰 증진이 필요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미끄럼 마찰성능이 이미 확보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등 무분별한 설치를 피하도록 규정함

69)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근에 설치한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순서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제한속도인 30㎞/h 이상 과속이 가능하여 급정지 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2차로 이상의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구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함

70)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함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표 3]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구간 미끄럼 마찰계수 측정 결과

(단위: 개소, %)

연번	시·도	시·군·구	미끄럼마찰 계수 측정결과					
			최소기준(SN 37)이상		**최소기준(SN 37) 미만**		계	
			개소	율	**개소**	**율**	개소	율
1	경기도	고양시	13	68.42	**6**	**31.58**	19	100.00
2		수원시	15	31.91	**32**	**68.09**	47	100.00
3		용인시	7	87.50	**1**	**12.50**	8	100.00
4		화성시	4	30.77	**9**	**69.23**	13	100.00
5		평택시	6	35.29	**11**	**64.71**	17	100.00
6	경상북도	포항시	6	37.50	**10**	**62.50**	16	100.00
7	대구광역시	북구	10	66.67	**5**	**33.33**	15	100.00
8		수성구	3	100.00	**-**	**-**	3	100.00
9	전라북도	전주시	13	68.42	**6**	**31.58**	19	100.00
10	충청북도	청주시	33	70.21	**14**	**29.79**	47	100.00
계			110	53.92	**94**	**46.08**	204	100.00

자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측정결과 재구성

더욱이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한 전체 204개소 중 88.24%인 180개소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동일구간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을 하지 않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미끄럼 마찰계수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이 미끄럼 저항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동일구간의 일반도로보다 미끄럼 저항성능이 오히려 떨어져 우천 등으로 인해 포장면이 젖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급정지할 때 적정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안전시설지침에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공용 중인 도로의 미끄럼 마찰계수 최소기준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며 안전관리지침 중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기준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유지관리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낮은 구간에 대하여 각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을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이 적정 품질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이 일정 기간 동안 도로 포장면의 최소 미끄럼 마찰계수 기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②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도로 포장면의 최소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해 각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적정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개별처분요구안 (10)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교통사고원인조사 제도 운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개요

국토교통부는 2008. 1. 1.「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조사 외에 교통시설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도로관리청[71]이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교통시설 개선·보완에 활용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원인조사 제도를 마련하였고, 2010. 6. 30.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서 중상사고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72]을 개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교통안전법」 제50조 등에 따르면 도로 등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도로관리청)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또는 중상사고 10건 이상 등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71)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도지사, 지방도의 경우 해당 시장

72)「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5]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것으로 의심되는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2018. 12. 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05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고누적지점·구간을 선정하여 도로관리청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사고현황, 현장조사결과, 단기 및 장기 개선안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도로관리청은 소관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교통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각 도로관리청이 사고누적지점·구간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에 따라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교통사고원인조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8.~4. 5.) 동안 지방자치단체장[73]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74]을 구축하여 매년 지방자

73)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일반국도의 경우에도 시내구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이며, 보행자 사고는 시내구간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내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

74)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교통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교통안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구축·관리 중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치단체별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지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2017년 6개 사고 다발지점의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일부 사례[75]가 있을 뿐 그 외의 모든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점(구간)의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통약자와 보행자 관련 교통안전지수 하위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근 3년간(2015~2017년) 중상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15건 이상 발생한 지점(구간) 355개[76](총 6,782건, 평균 19.1건)를 1차로 선정하고, 위 355개 지점(구간)에 대해 대물피해환산법[77](EPDO,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으로 산출한 수치를 지역별로 합산하여 [표]와 같이 수치가 높은 6개 지역 내 10개 지점(구간)을 2차로 선정한 후 현장점검[78]을 실시하였다.

[표] 현장점검 대상 지점(구간) 보행자 사고 현황

(단위: 건, 명)

지역	지점(구간)명	최근 3년간 사고 건수	사상자 수	
			사망	중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범물네거리 부근)	31	2	29
	달서구 성당동(ʒ 부근)	26	2	24
	달서구 감삼동(œ고등학교 부근)	20	3	1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æ 부근)	25	4	21
	덕진구 진북동(ß 부근)	20	5	15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소신여객정류장 부근)	37	3	34
	심곡본동(심곡고가사거리 인근)	29	2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토큰가게 부근)	23	2	2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ß 부근)	29	1	2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모란삼거리 부근)	51	1	5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75)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사고누적구간에 대하여 개별 개선안이 아닌 일반적인 개선안을 수립(경기도 화성시)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한정하여 실시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을 발주(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하고 있을 뿐 교통사고원인조사는 미실시

76) 「교통안전법」 제52조 등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의 교통사고 GIS를 활용하여 지점을 선정하였고, 보행자 교통사고 이외에 차대차 교통사고 건수를 포함할 경우 전체 사고 건수 및 지점 수는 증가하지만, 현장점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지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고 건수 기준을 15건으로 설정

77) 사고 심각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계산하는 통계표현기법

78) 해당 지점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조사 및 시설 담당자를 면담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안 검토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그 결과 [별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구간)의 교통시설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3 부근) 지점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노인 보행자를 고려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보행자 무단횡단이 많은 시외버스정류장 진출입구에 고원식 횡단보도[79] 설치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차로에 직접 연결된 시외버스정류장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하나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시설 개선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도로 구간을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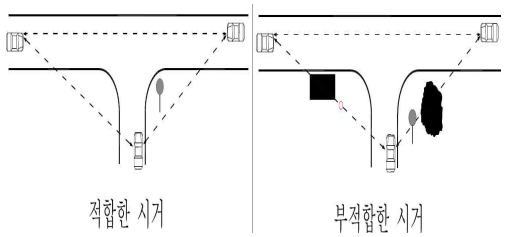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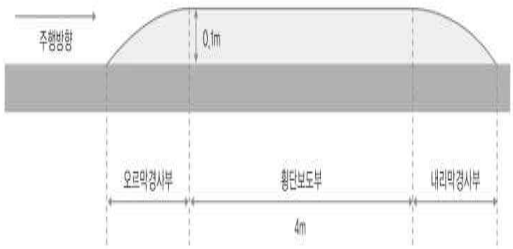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도로 구간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원인조사 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도로관리청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79) 과속방지턱 형태로 설치되는 차량속도 저감용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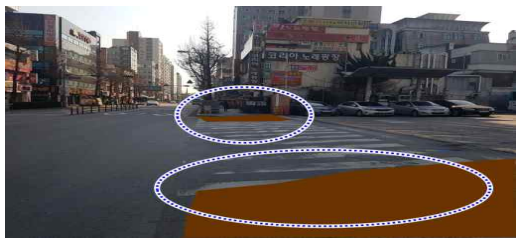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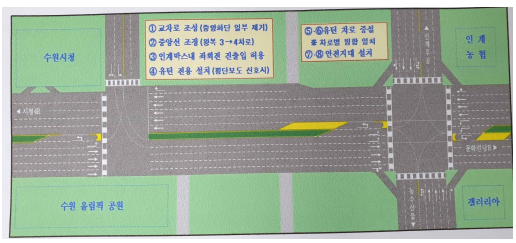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별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구간)의 교통시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점(구간)명	문제점	개선 방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범물네거리 부근)	① 교차로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등 지장물로 인하여 시거 제약  ② 도로모퉁이 보차도경계선의 곡선반경이 커서 회전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 사고 우려 ③ 교차로에 보행통행량 및 차량 회전교통량이 많으며, 도시철도 교각 등 교차로 내 시거가 좋지 않아 사고 발생	① 교차로 내 시거를 제약하는 지장물 제거 또는 이설  ② 보차도경계선 곡선반경을 도로의 등급에 부합하게 설치(장기) ③ 보행자 동선, 보행자 및 차량 교통량, 신호주기, 연동 등을 고려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검토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ʒ 부근)	① 재래시장 인근으로 고령자 및 보행자가 많으나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이 짧아 사고 우려 ② 4지 교차로에 시외버스정류장 진출입구가 직접 연결되어 실제 5지 교차로로 운영 중인데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이 많아 사고 우려 ③ 시외버스정류장 진출입구에 주차장 진출구가 역방향으로 운영되어 운전자 혼란으로 인한 사고 우려 	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속도 0.9m/s 및 1.0m/s→0.8m/s 적용) ② 시외버스정류장 진출입구를 교차로와 분리(장기)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검토  ③ 주차장 진출구를 정류장 진출구에 미리 합류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ㅒ 부근)	① 용산네거리 남측 용산로 약 280m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 횡단 수요가 있을 경우 우회거리가 길어 무단횡단 사고 우려 ② 한들로의 환승주차장 모퉁이 보차도경계선의 곡선반경이 커서 회전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 사고 우려	① 용산로와 한들로-용산로24길 교차구간에 횡단보도 설치 검토 ② 보차도경계선 곡선반경을 도로의 등급에 부합하게 설치(장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æ 부근)	① 무단횡단금지시설이 일부 구간만 설치되어 여전히 무단횡단 사고 발생 우려  ② 세이브존 앞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기가 좌측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 ③ 세이브존 앞 교차로 보행교통량이 많고 보행횡단 구간이 교통섬을 지나 연속되어 무단횡단이 많아 사고 우려	① 횡단보도 추가설치 또는 무단횡단금지시설 연장 설치 필요 ② 보행자가 신호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자 진행방향 우측에 신호기 설치 필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③ 보행자 동선, 보행자 및 차량 교통량, 신호주기, 연동 등을 고려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검토 * 미국의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 건수는 33.3% 감소, 충돌사고는 75.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한국의 경우 보행자 사고는 52.9%, 중상이상 사고는 4.8% 감소하는 것으로 효과 분석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

지점(구간)명	문제점	개선 방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β 부근)	①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등 지장물로 인하여 시거 제약 ② 횡단보도 전방 중앙식수대의 수목으로 시거 제약 ③ 폭이 좁고 노면이 평탄하지 않은 기린대로 중앙 보행자대피섬에 방향별로 경사가 있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 대기 시 미끄러질 우려 ④ 약 400m 직선구간인 기린대로 내 제한속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과속주행 사고 발생 우려	① 횡단보도 주변 시거를 제약하는 지장물 제거 또는 이설 ② 중앙식수대의 수목을 낮은 것으로 변경 ③ 배수를 고려하여 보행자대피섬 노면을 평탄하고 완만하게 설치하고, 보행자대피섬 내 수목 이설 ④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를 설치하고, 비신호횡단보도 전방(남노갈비 앞 교차로)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이설 또는 추가설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소신여객정류장 부근)	① 버스차고지 출입구가 넓고 담장 및 버스정류장으로 시거가 불량하여 진출입차량과 보행자간 사고 우려  ② 상가밀집지역으로 횡단수요가 많으나 약 190m 구간(북부역사거리~대학길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 사고 우려 ③ 부일로 구간(북부역사거리 통과)은 시가화된 구간인데 제한속도 60km/h로 운영하고 있어 중상사고 발생 우려 ④ 횡단보도와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종점부가 이격되어 보행자가 이격구간으로 통행할 경우 사고발생 우려 ⑤ 횡단보도 보행교통량이 많으며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약 3m)가 짧아 사고발생 우려	① 차고지 출입구를 좁혀 상충면적을 줄이고 차고지 담장을 낮추거나 버스정류장 이설(장기)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② 횡단보도 추가설치 또는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시 사고 건수 72% 감소, 중상자 수 62.3% 및 경상자 수 72.6% 감소 ③ 부일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 ④ 무단횡단금지시설 연장 설치 ⑤ 정지선을 횡단보도로부터 후방 약 5m로 이설하고, 횡단보도를 약 8m로 확폭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심곡고가사거리 인근)	①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 시종점부가 이격되어 보행자가 이격구간으로 통행할 경우 사고발생 우려 ② 교차로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된 가로수, 지주 등 지장물로 인하여 시거 제약 ③ 하우고개입구 교차로 전방 약 50m 내리막길 지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구간 과속에 의한 사고 우려 ④ 하우고개입구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기 미설치로 좌회전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우려	① 중앙분리대 연장 설치 ② 교차로 내 시거를 제약하는 지장물 제거 또는 이설 ③ 어린이보호구역을 하우고개입구 교차로까지 연장하고 과속방지턱 등 설치 ④ 보행자 신호기 설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토큰가게 부근)	① 쇼핑타운 등 보행유발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 및 보행자가 많은데도 조명시설이 미흡하여 야간 사고 발생 * 횡단사고 5건 중 3건이 야간에 발생	① 횡단보도 집중 조명 설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β 부근)	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단절구간이 있어 보행자의 도로진입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 ② 수원시청 앞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약 2m)가 짧아 사고발생 우려 ③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노후로 시인성 저하 ④ 수원시청사거리에서 수원시청 및 마트진입 차량의 우회거리 과다 	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단절구간 연장 설치 ② 정지선을 횡단보도로부터 후방 약 5m로 이설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③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재설치 ④ 교차로 신설 

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모란삼거리 부근)은 현장확인 결과 도로관리청 등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작성 제외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쇄: 배수현 / 시설안전단 제3과 (2019-07-03 17:28:44)